

선박건조계약과 BBCHP

법무법인(유) 광장

정우영 변호사



목 차

- I. BBCHP/ 선박건조계약
- II. BBCHP 금융의 도입
- III. 한국에서의 BBCHP금융의 변천
- IV. BBCHP금융 기본계약
- V. BBCHP 계약의 주요 내용
- VI. 선박건조계약의 주요내용
- VII. SPC란 무엇인가
- VIII. Tax Lease 란 무엇인가
- IX. BBCHP 계약과 기업 회생 절차
- X.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I. BBCHP/ SBC란?

■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

- 선체용선계약
- 금융리스계약
- 할부매매
- Barecon 2001/2007 양식; BIMCO/ 현실은 은행 작성의 BBCHP를 사용함

■ 선박건조계약

- 도급계약
- 대금의 분할지급 + 환급보증
- 소유권은 점진적으로 이전되지 않음
- SAJ 양식

-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통로?
- 계약은 선체용선인데, 사선대라고 부르는 이유?
- 선박금융을 대표하는 표현으로 사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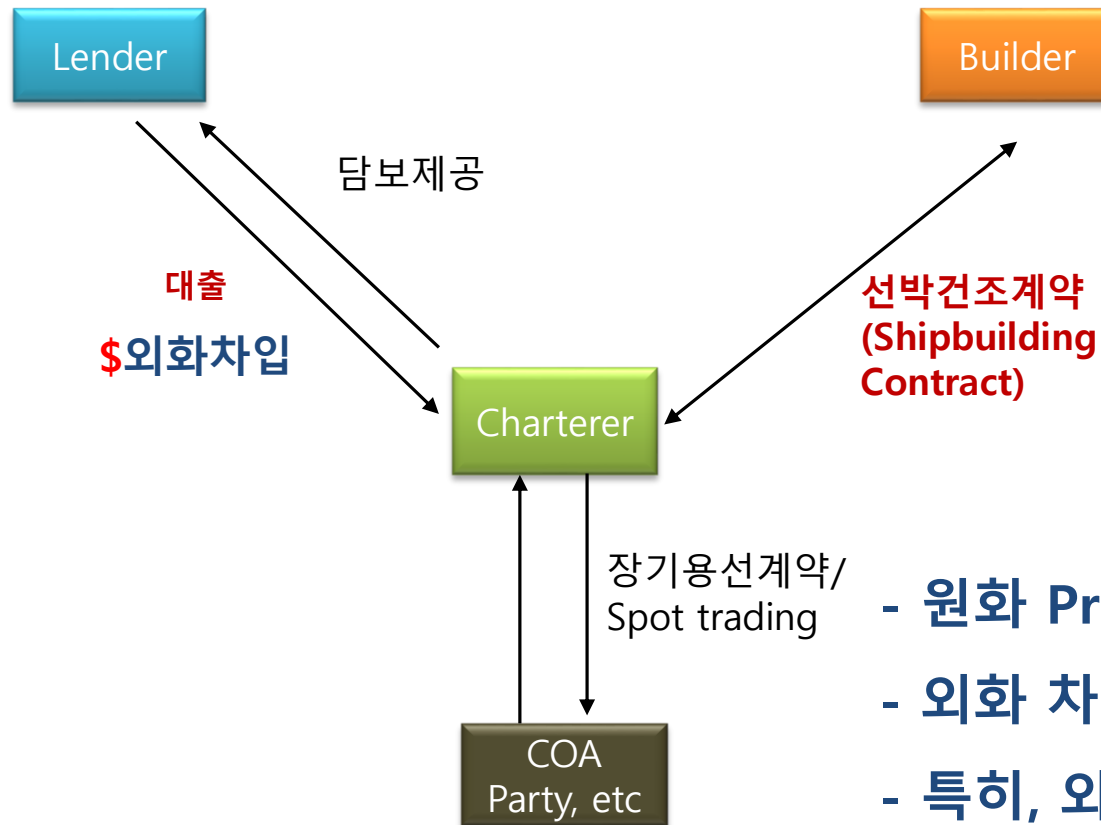


II. BBCHP 금융의 도입

90년대 초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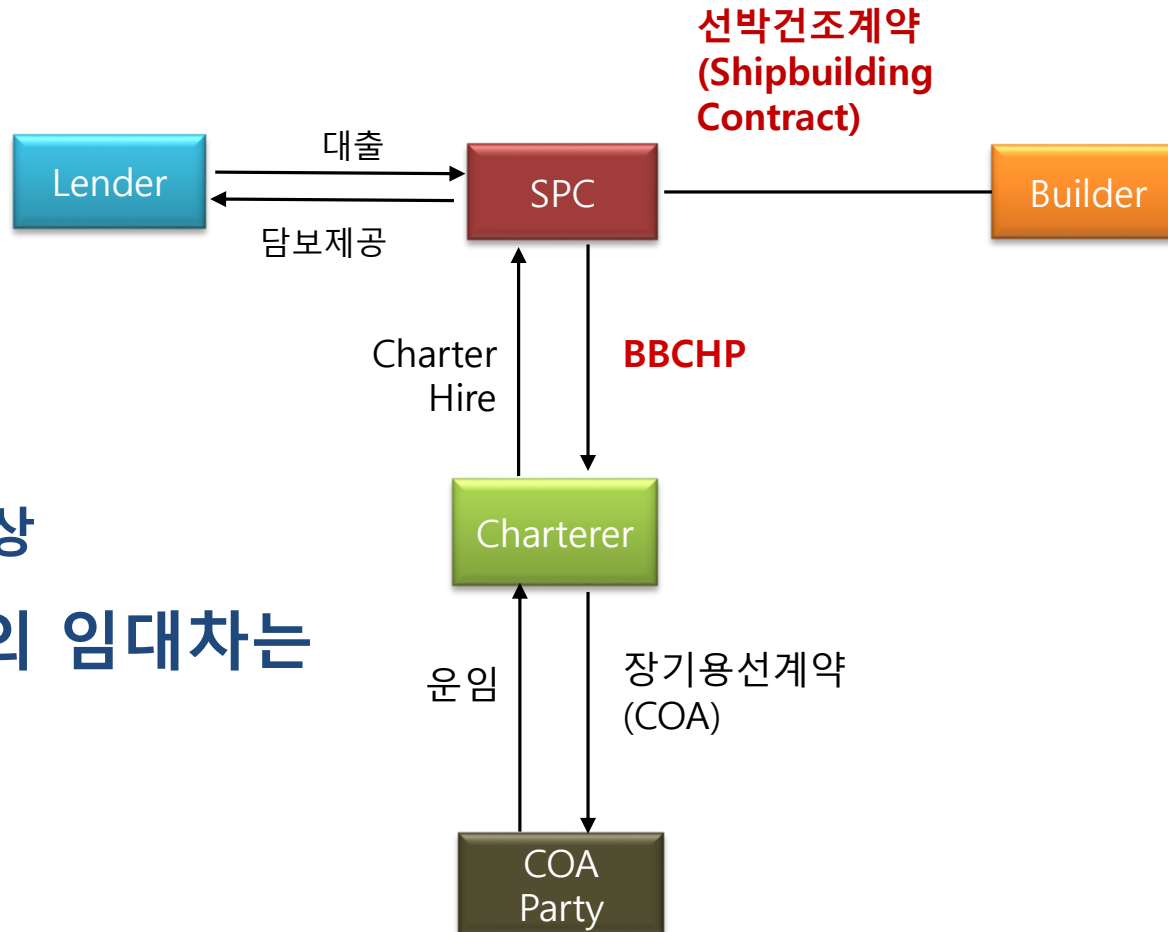
- 80년대 계획조선 자금 (원화) 지원
- 일반 금융기관의 유로 달러 금융
- 한국가스공사가 입찰한 LNG 도입을 위한 선박금융이 계기를 형성

II. \$ 차입을 하려니 ~~~



- 원화 Prime Rate는 ?
- 외화 차입이 가능한가?
- 특히, 외환 관리법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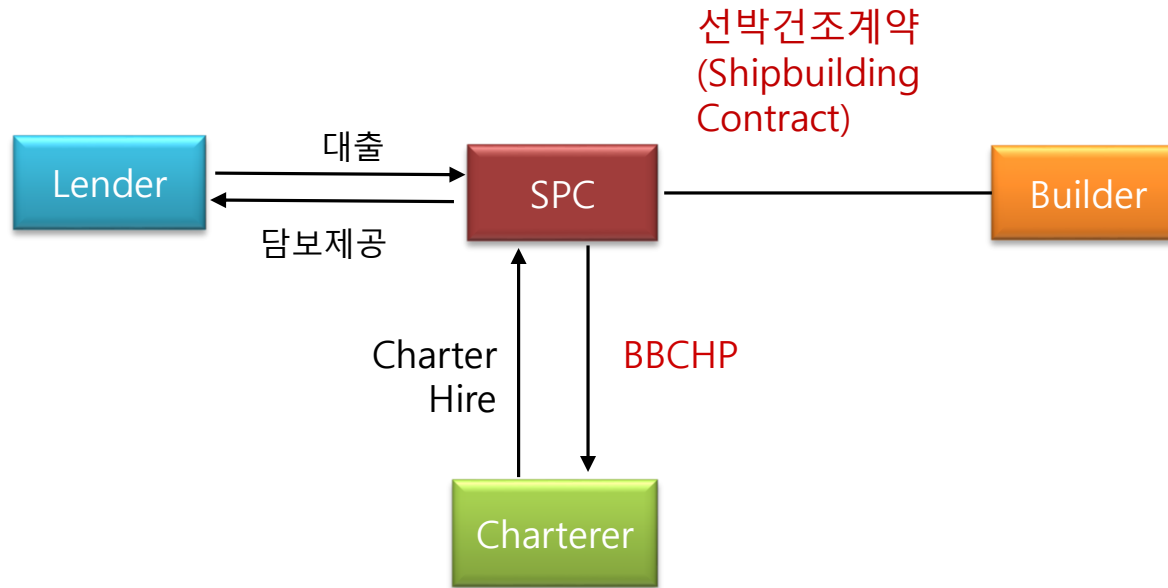
II. 이렇게 하면 가능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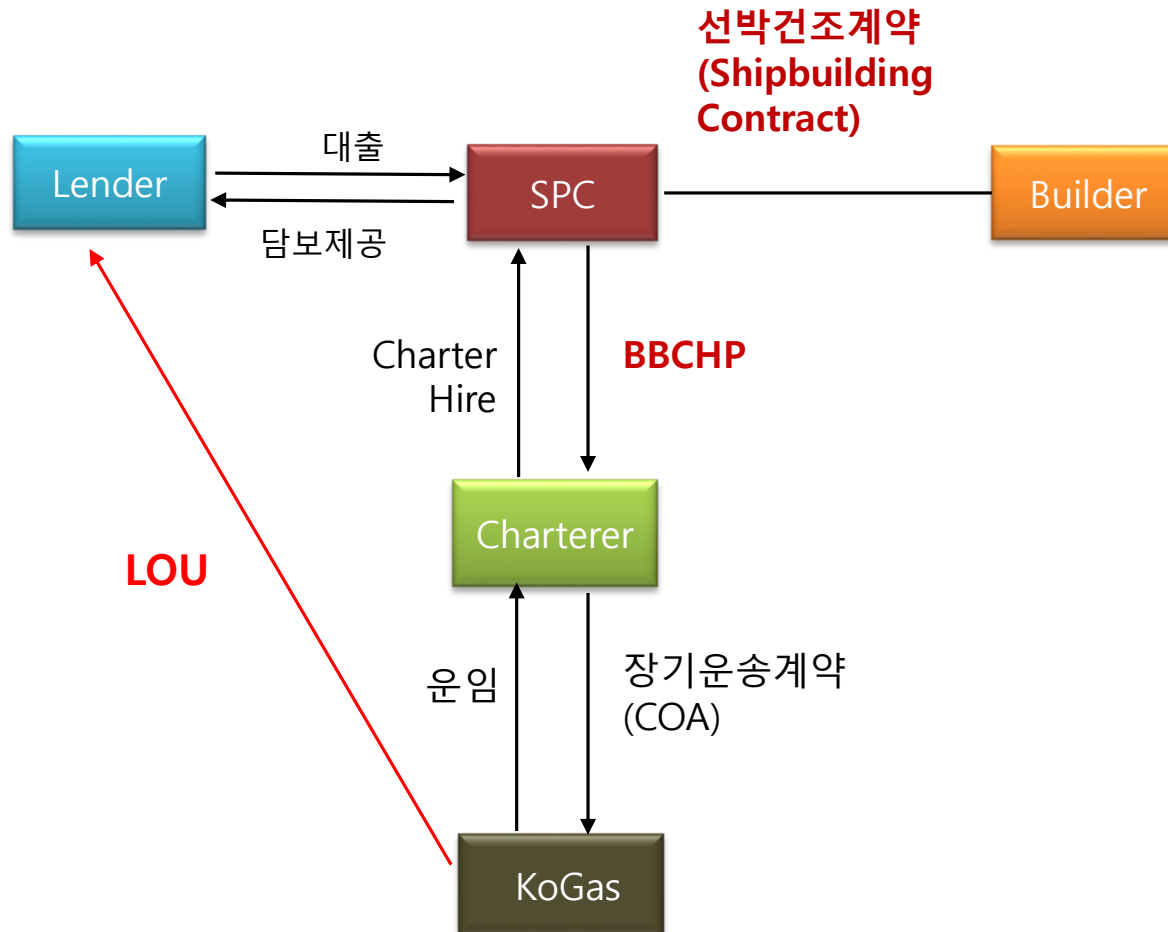
외환관리법상

산업장비의 임대차는
허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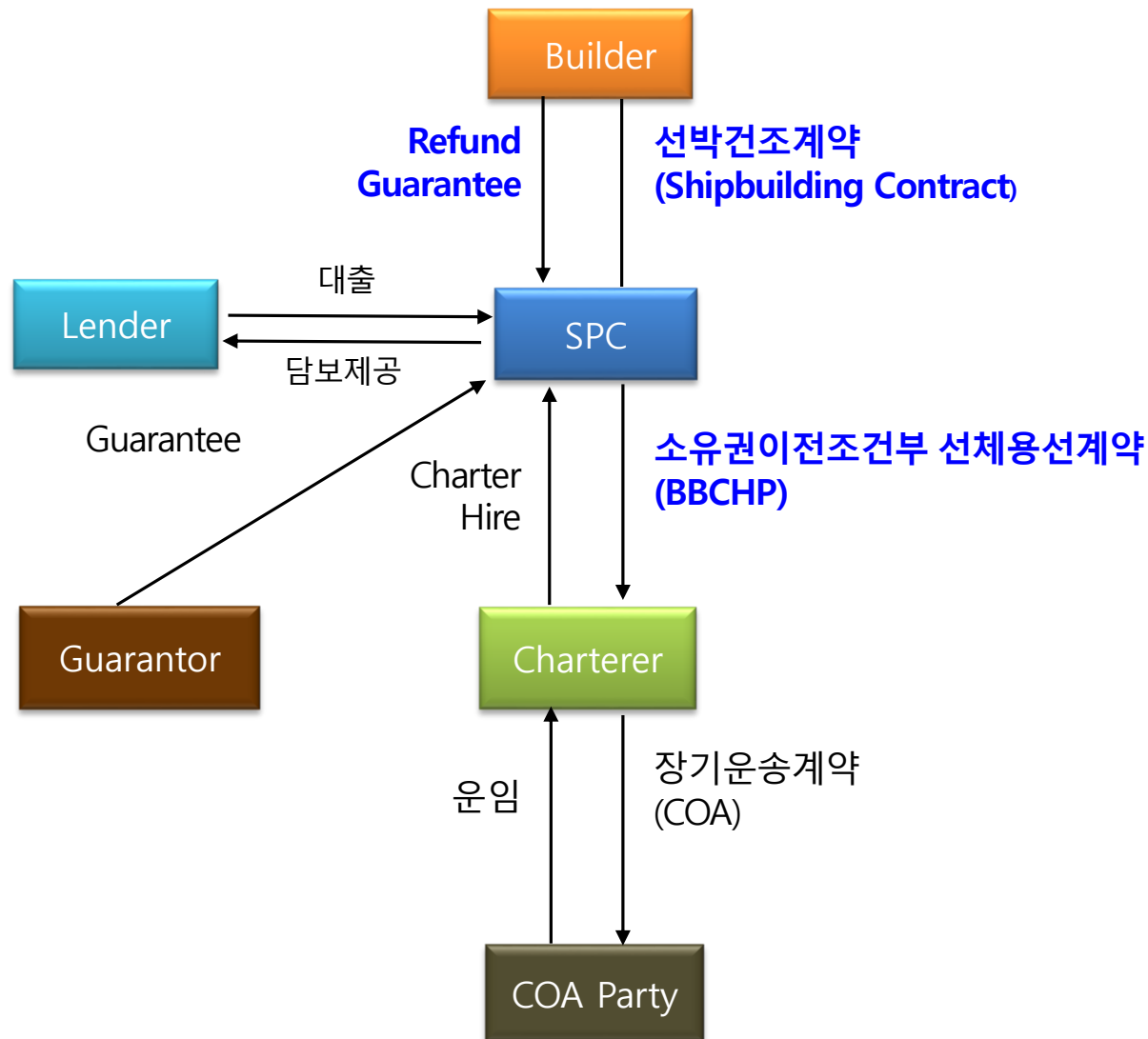
II. 도화선_가스공사 금융 _1st Step



II. 도화선_가스공사 금융 _ 2nd Step



II. BBCHP 금융의 구조 완성





III. 한국에서의 BBCHP금융 변천

97년 후반 ~ 2003년

- 국내 일반 은행이 주도하는 대형 선박금융은 전무한 상황
- 회계 부정 사건과 북핵 문제로 저조
- 선박투자회사법 제정

-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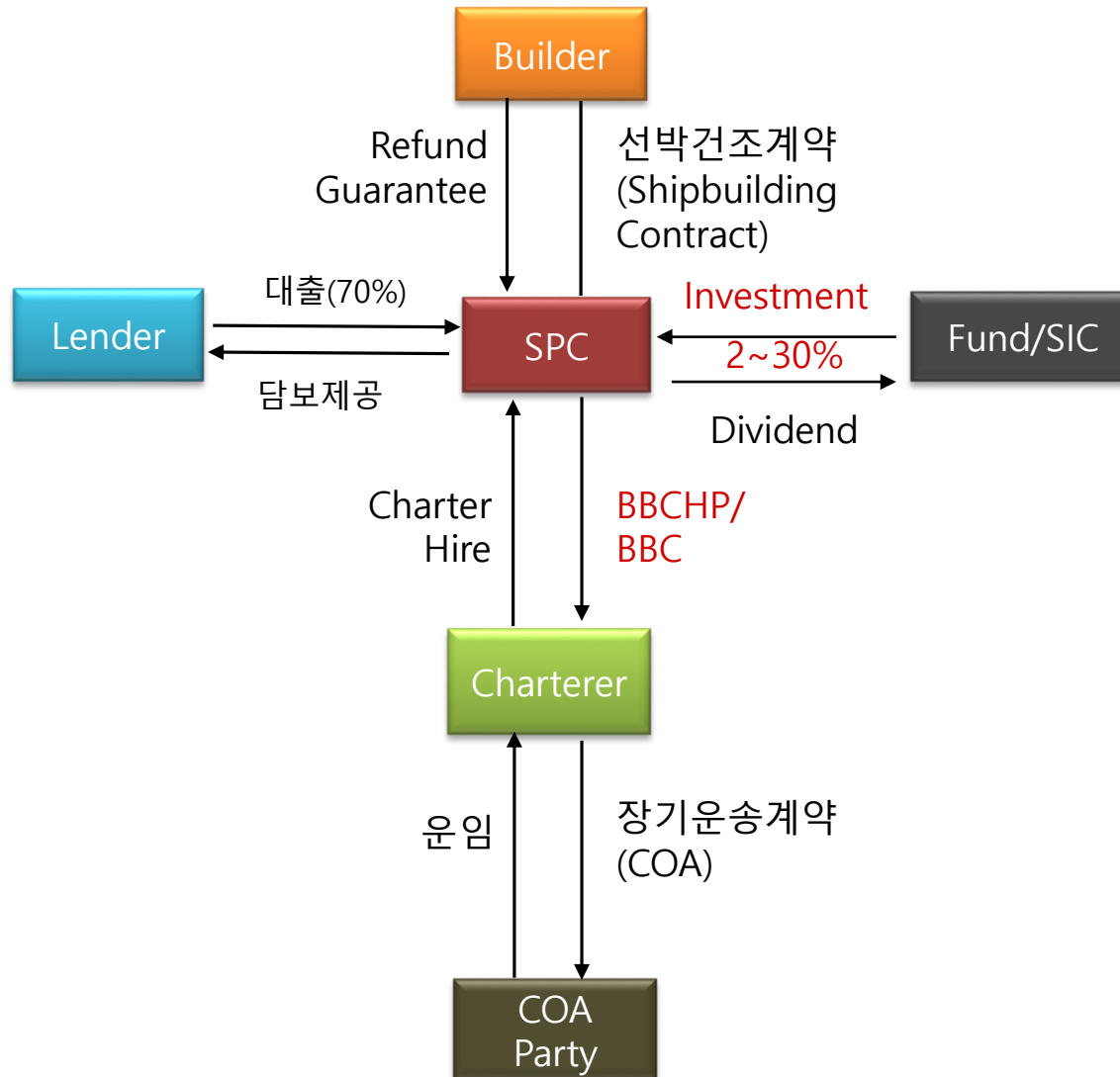
- ✓ SPC를 해외에 설립하는 대신 국내에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고, 주식을 발행하여 주식시장에서 선박구입자금을 모집할 것을 고려한 형태의 거래
- ✓ 독일의 Kommendit Gesellschaft Fund (K/G Fund), 노르웨이의 Kommandit Selskap Fund (K/S Fund)를 참조한 것임

■ 제정이유 및 주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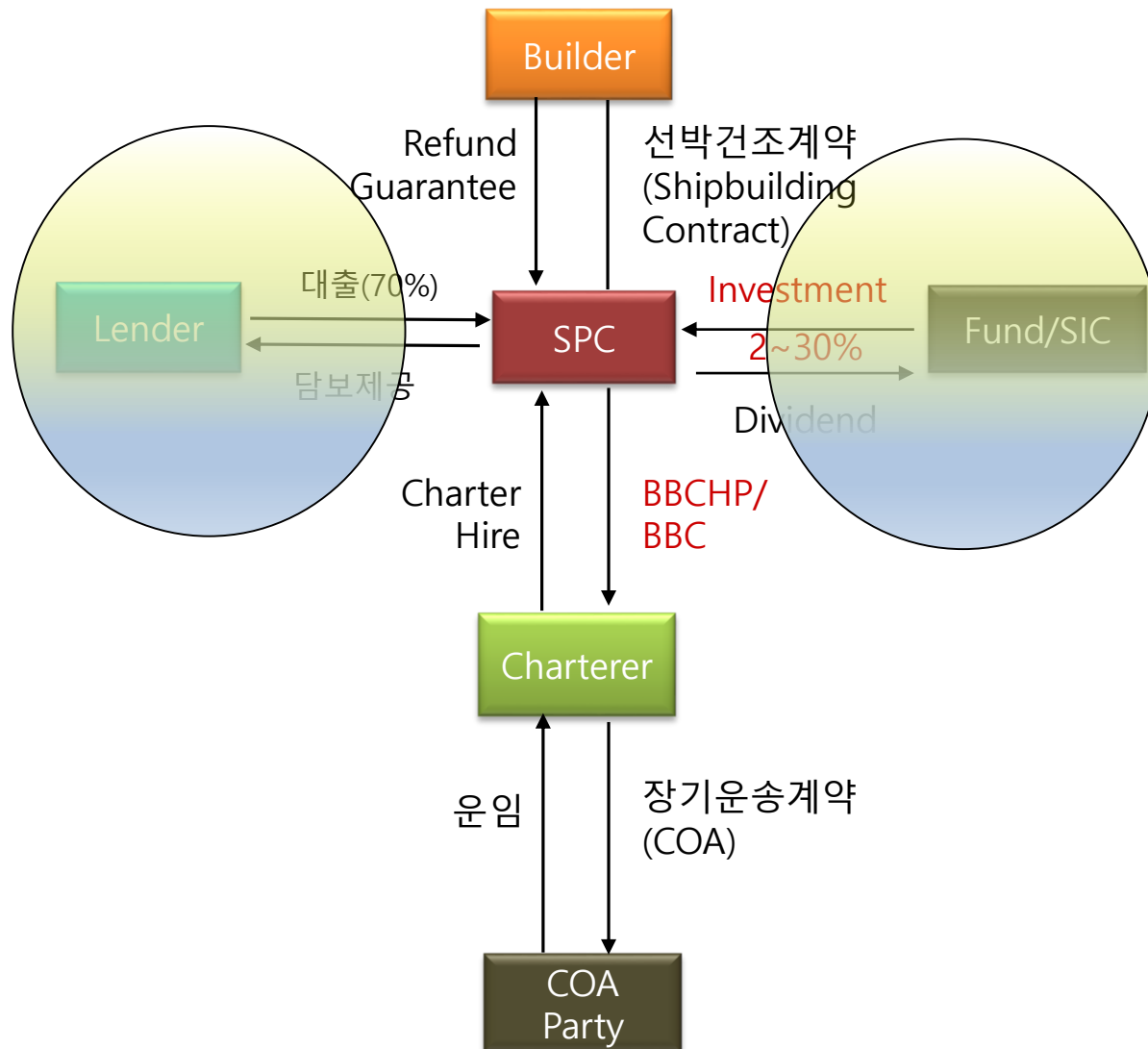
- ✓ 선사들로 하여금 선박도입에 필요한 금액의 20 -30%에 달하는 자기자본 투자금을 국내 주식시장 등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줌
- ✓ 국내 선박투자회사,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설립과 투자자 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함
- ✓ 2002년 8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5개의 선박운용회사가 설립되었고, 2004년2월 동북아 1호 이후 2014년까지 약 188척의 선박이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해 건조됨

2003년 이후 ~ 리만사태

- 2004년 이후
국제적인 해운운임 및 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선박금융시장이 최고의 활황 국면을 맞이함
(해운의 황금기)



III. SIC/Fund 개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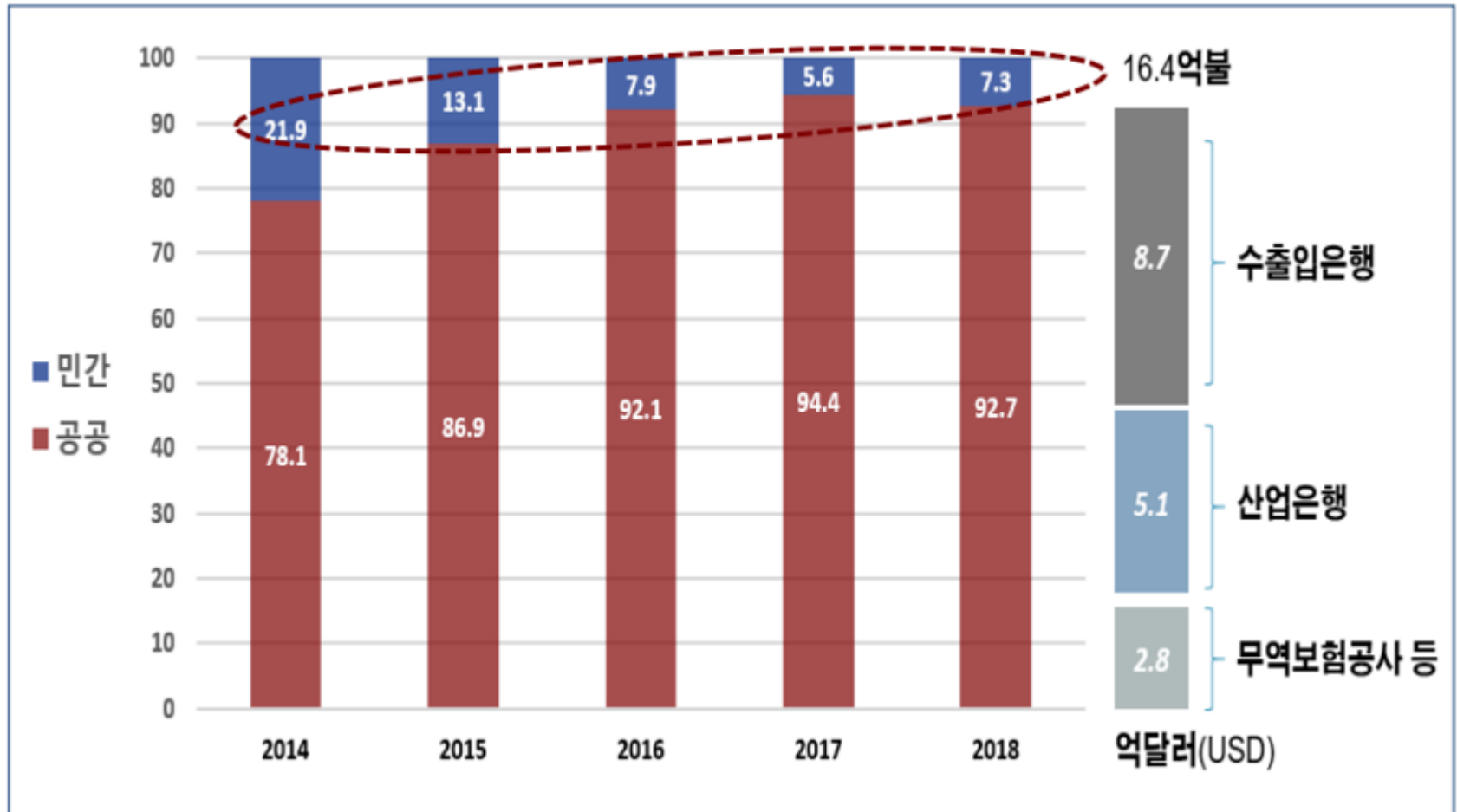
리만사태 ~ 현재

- 2008년 9월경 리만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로 인한 해운시장의 위축이 지속됨
- 대한해운/ 삼호해운/ STX Pan Ocean/ 한진해운 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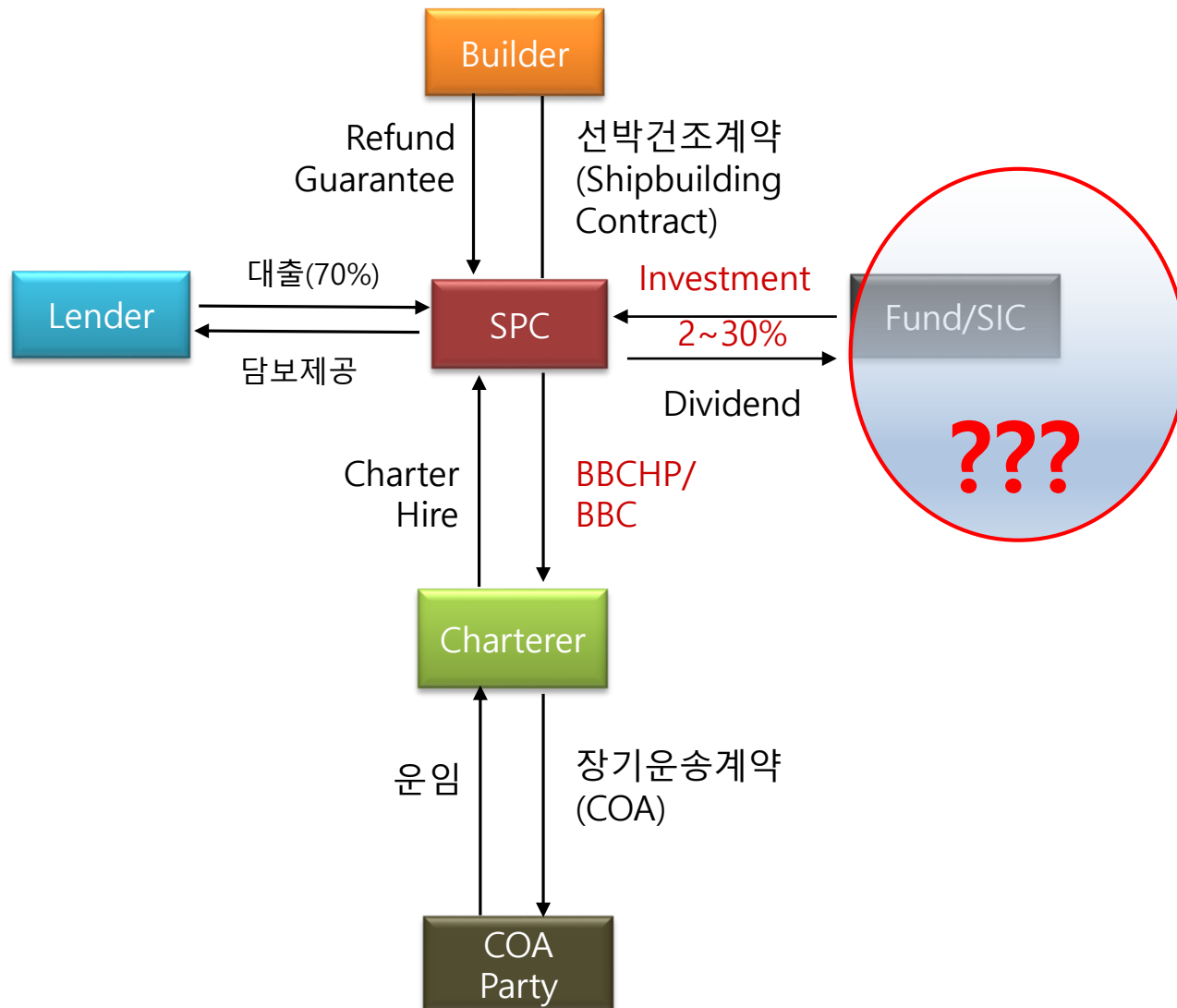


세계 은행권의 해양금융 Syndicated loan 거래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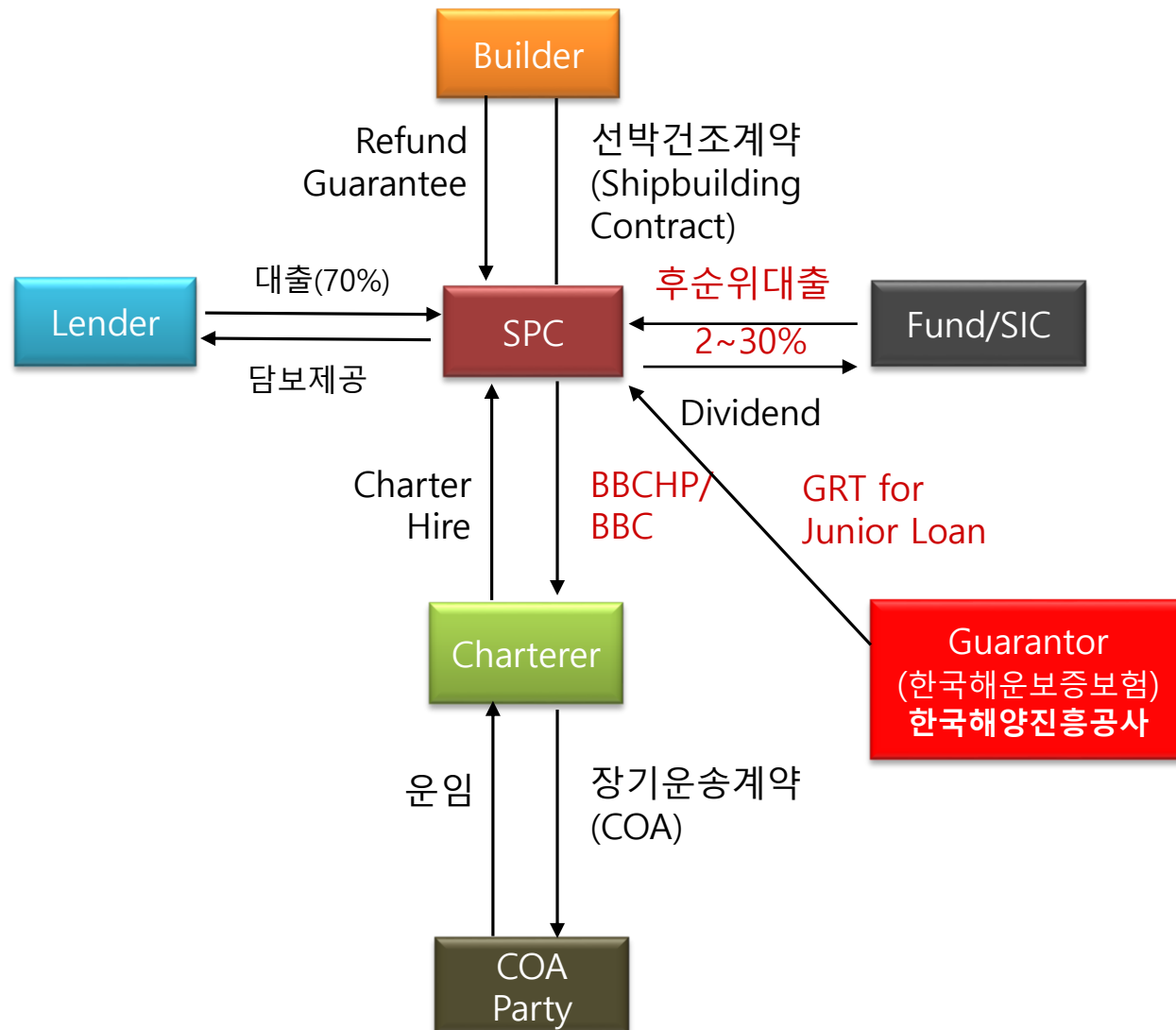




III. Fund 모집에 적신호



III. 후순위 대출 보증 개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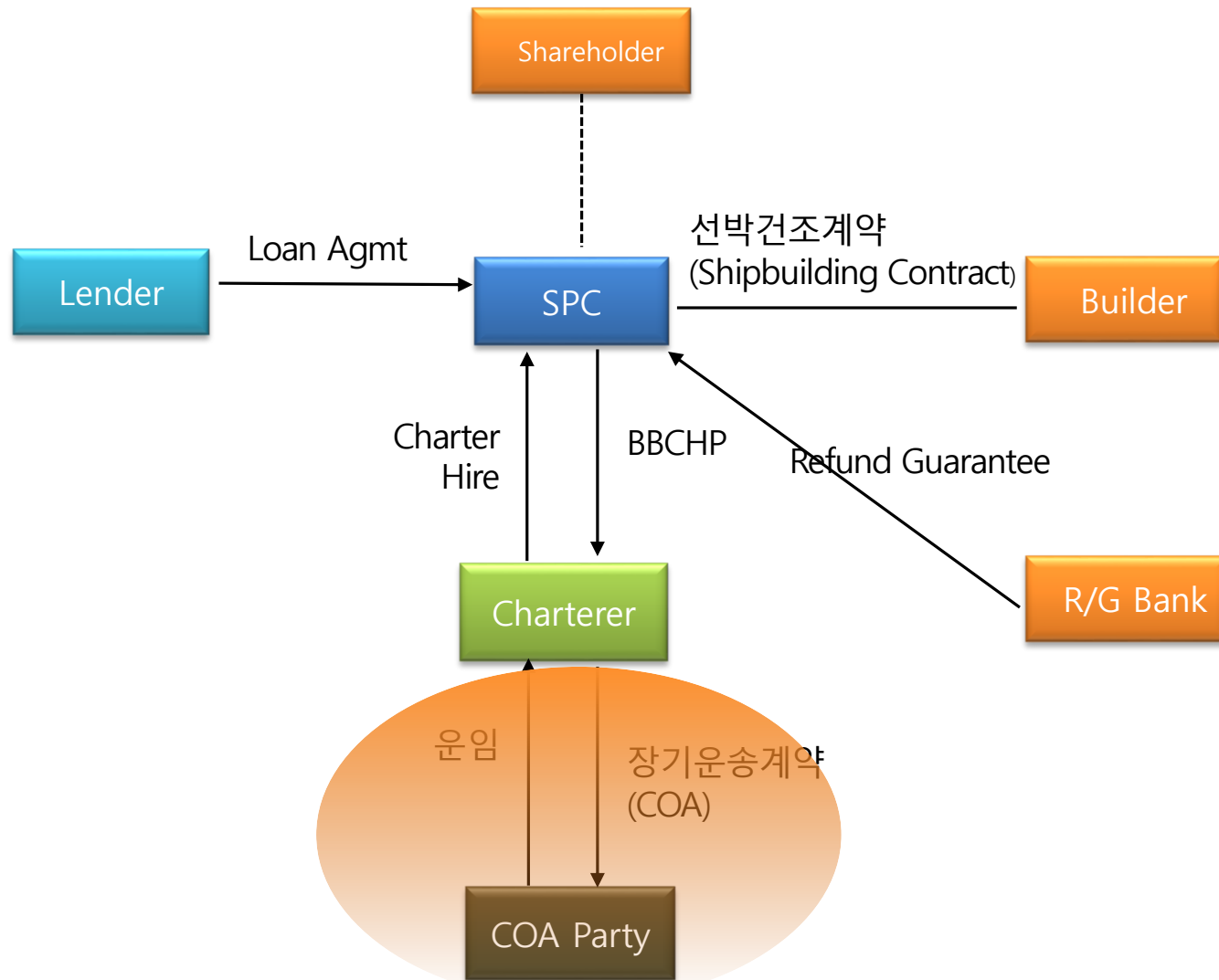


IV. BBCHP 금융 기본 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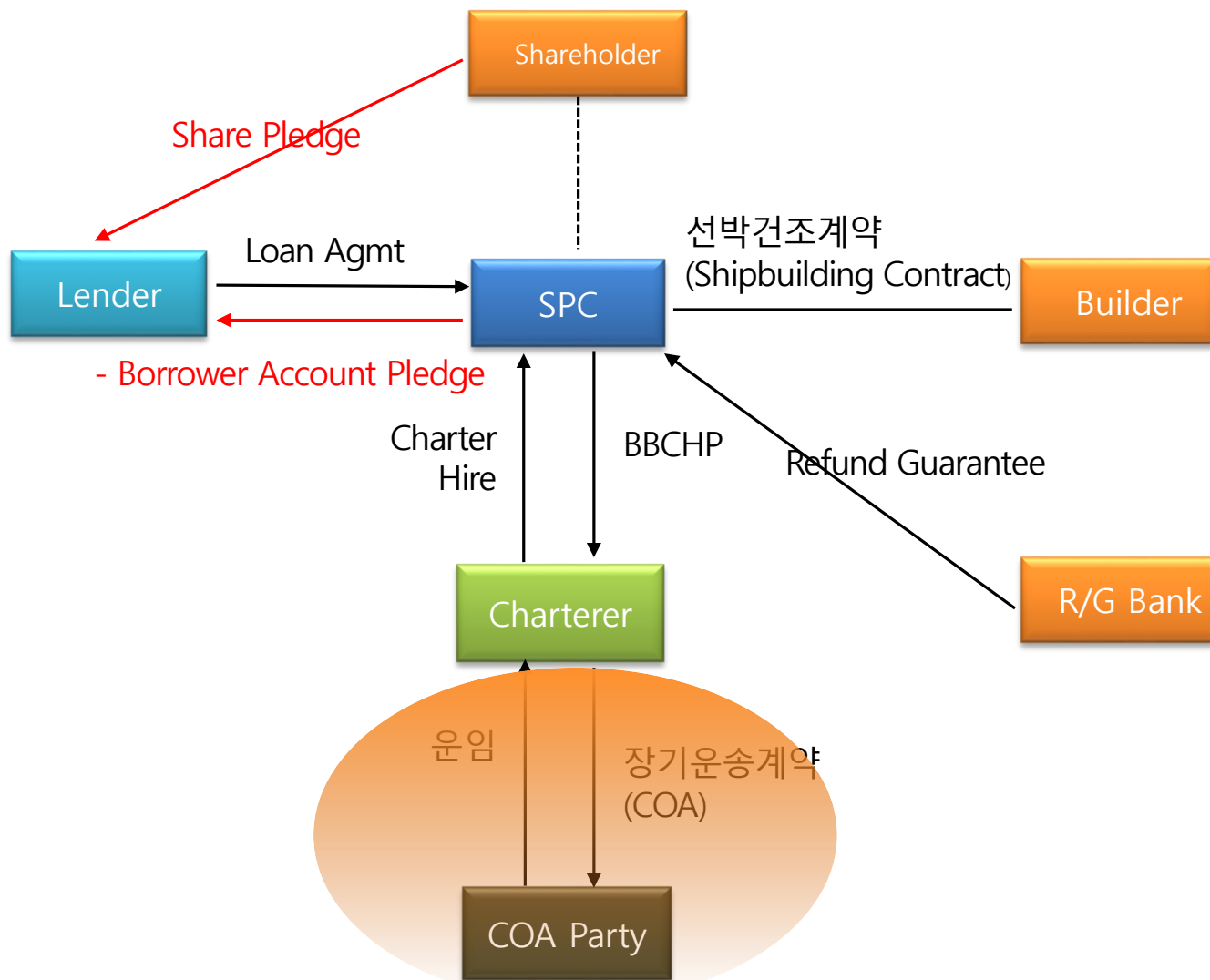
- 선박인도 전
 - ✓ Facility Agreement
 - ✓ Shipbuilding Contract
 - ✓ Supervision Agreement or Basic Agreement
 - ✓ Refund Guarantee
 - ✓ Letter of Undertaking

*** Risk Hed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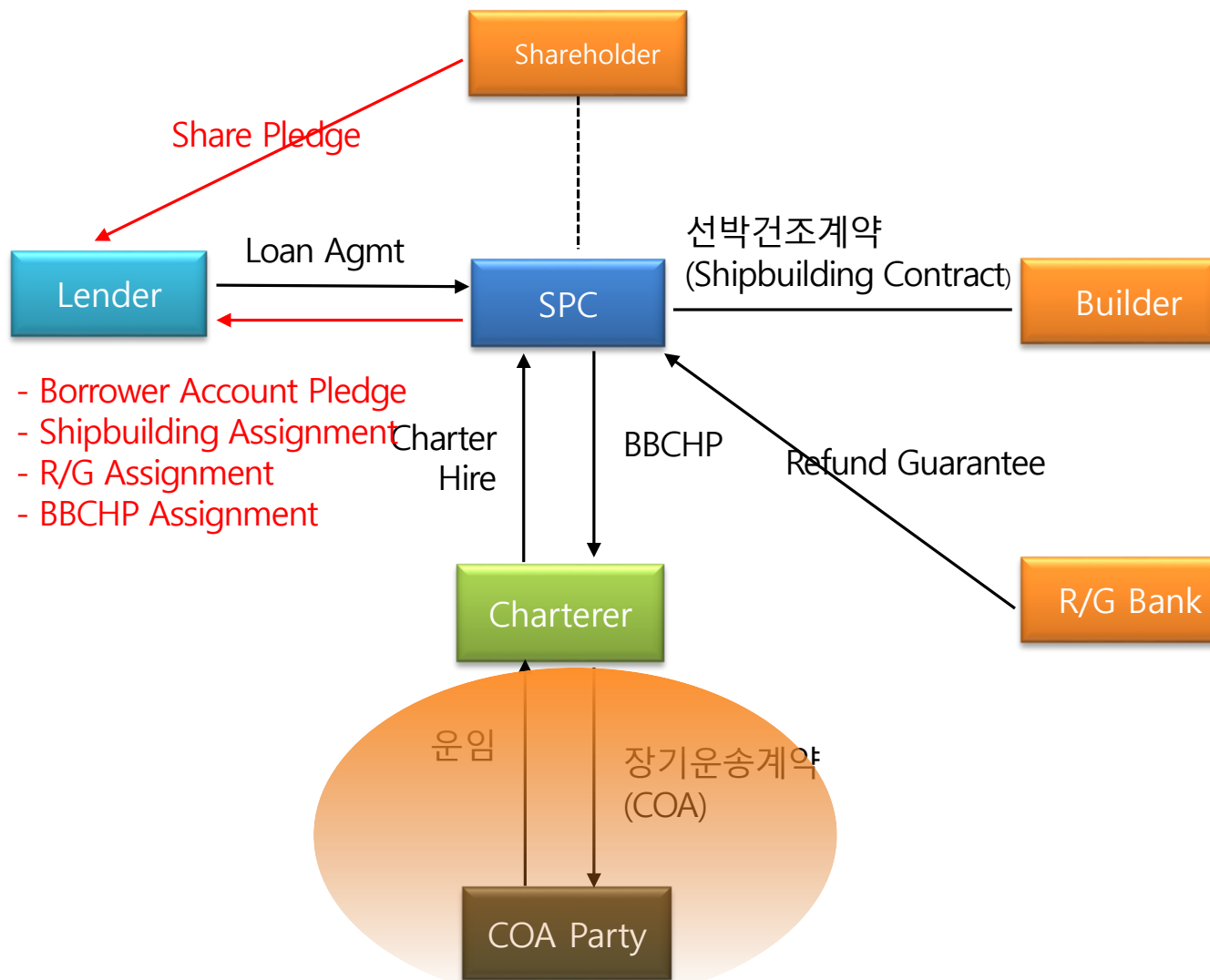
III. 1. 은행의 일반 BBCHP 개요도



III. 1. 은행의 일반 BBCHP 개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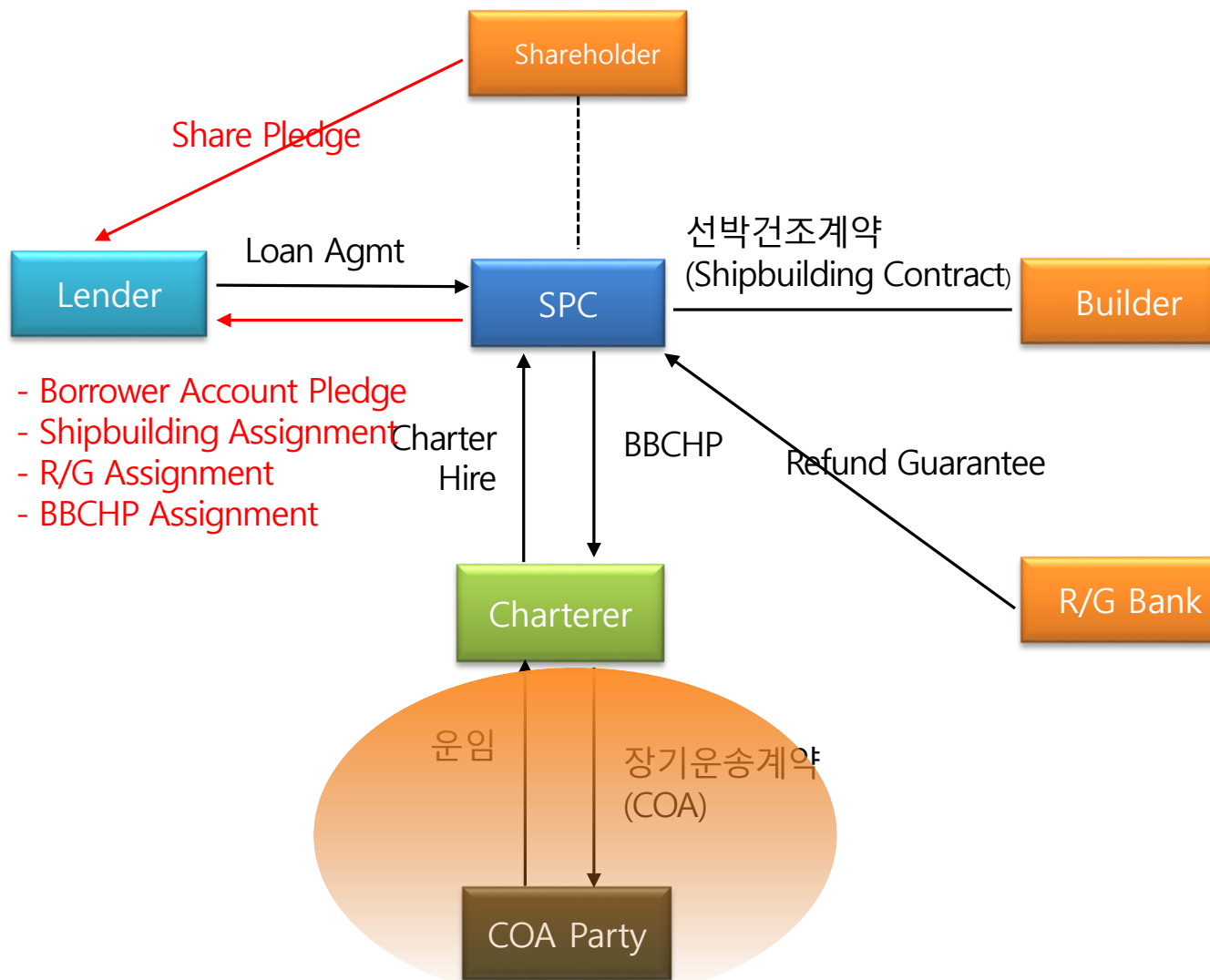


III. 1. 은행의 일반 BBCHP 개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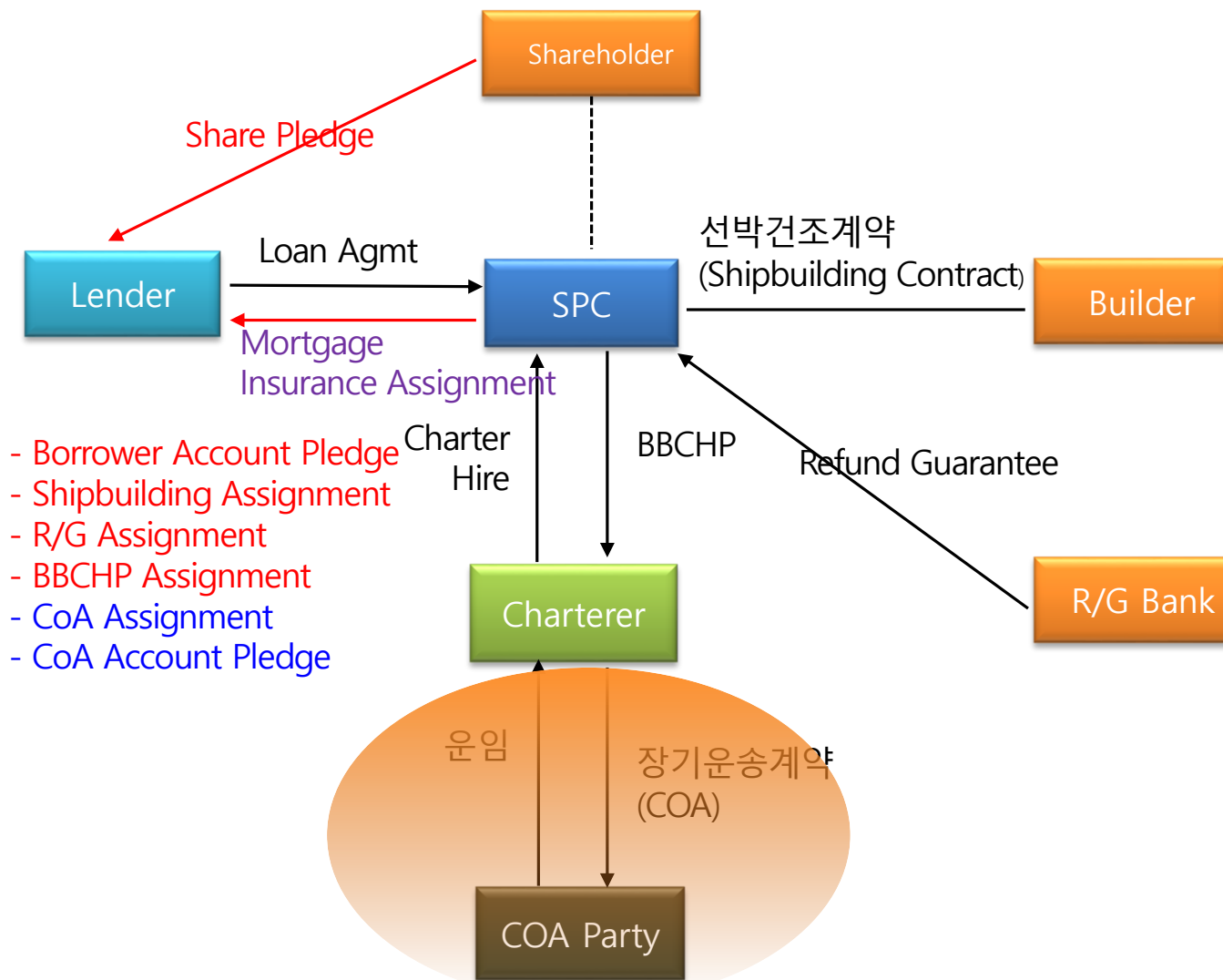


- 선박인도 후
 - ✓ Loan Agreement
 - ✓ Mortgage Agreement
 - ✓ BBCHP Assignment Agreement
 - ✓ Insurance Assignment Agreement
 - ✓ Share Pledge Agreement
 - ✓ Account Pledge Agreement

III. 1. 은행의 일반 BBCHP 개요도



III. 1. 은행의 일반 BBCHP 개요도





V. BBCHP 계약

■ 운항 선박의 확보 방법

- 신조 발주, 중고 구매
- 선체용선계약 (나용선이라고도...)

소유권이전 조건부 선체용선
(Bareboat Charter Hire Purchase)

단순 선체용선
(Bareboat Charter)

- 정기용선 (Time Charter)
- 항해용선 (Voyage Charter)

*선사가 대형화 될수록 선박금융을 통한 나용선과
정기용선 방식으로 선박을 확보

- 선체용선계약은 ...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제848조)
 - ✓ cf: 임대인의 의무 - 목적물 인도의무, 수선의무,
 - ✓ 방해제거의무, 비용상환의무, 담보책임 등 ..
 - ✓ barecon 2001 등과 비교
- 선체용선을 **등기**한 경우 ... 제3자 대항력을 갖는다 (상법 제849조) ... 채권인가 (용익)물권인가?
-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 (상법 제850조) ... 예외; 우선특권
- 선장 및 선원에 대한 일반적 지시·감독권을 갖고 그를 통해 선박에 대한 점유권을 확보하며 선박의 항해를 지배함 (상법 제847조)

■ 법률적 성질:

임대차 유사설: 선박임대차 계약 및 노무 공급계약의 혼합 계약의 성격을 갖는다고 해석

운송계약설:

해기.상사 구별설: 상사사항에 대하여는 선장 지휘권이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점유 함
불법행위 책임, 해난구조료, 재운송시 선박소유자의 책임 (809조)

- 선박의 사용 수익권을 취득함-점유권은?
-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는 상법 제850조의 적용 가부
 - 불법행위 및 운송 계약의 주체로의 책임 부담
(선박 충돌시 소유자 책임, 재운송 계약상 소유자 책임)

■ BBCHP와 BBC의 차이점

- 기본적 차이점

- ✓ 선채용선 기간이 종료하거나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발생

- 회계 처리상 차이점

- ✓ BBCHP,는 금융리스로 보아

선박건조가액, 건조 중 이자 및 부대비용 합계금 전액을
자산 항목으로, 용선료 부채 총 합계를 부채 항목으로 계상

- ✓ BBC, 운영리스로 보아 용선료 기간별로 해당 용선료만
사용료 부채 항목으로 계상 ➡ **IFRS16도입으로 큰 변화**

- **외국환관리법상 차이점**

- ✓ BBCHP,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
(단, 미화 3,000불 이하의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 ✓ BBC,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 **세법상 차이점**

- ✓ BBCHP, 연불조건부 매매로 간주 취득세 (및 농특세, 교육세 등 부가세도 납부)를 납부 / 세액원천징수(Withholding Tax) 의무는 없음
- ✓ BBC, 취득세가 없음/ 용선료를 전액 사용료 수익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

- **관세법상 차이점**
 - ✓ BBCHP는 수입통관신고를 하나
BBC는 이를 요하지 않음
- **선원법상의 차이점**
 - ✓ BBCHP의 경우 반드시 일정 수 이상의 우리나라
선원을 고용하여야 함

■ 선체용선 계약의 특징 및 주요 내용

- ① 용선료 지급 Schedule이 원리금 균등 형태로 작성됨
- ② 보험의 종류와 조건이 상세히 기재됨
- ③ 선박 전손시 (Total Loss) 처리 방법,
규정손실금 (Stipulated Loss Value) 조항,
강제수용 보상금 처리 조항 및 선박관리 조항
(IMO Rule) 등을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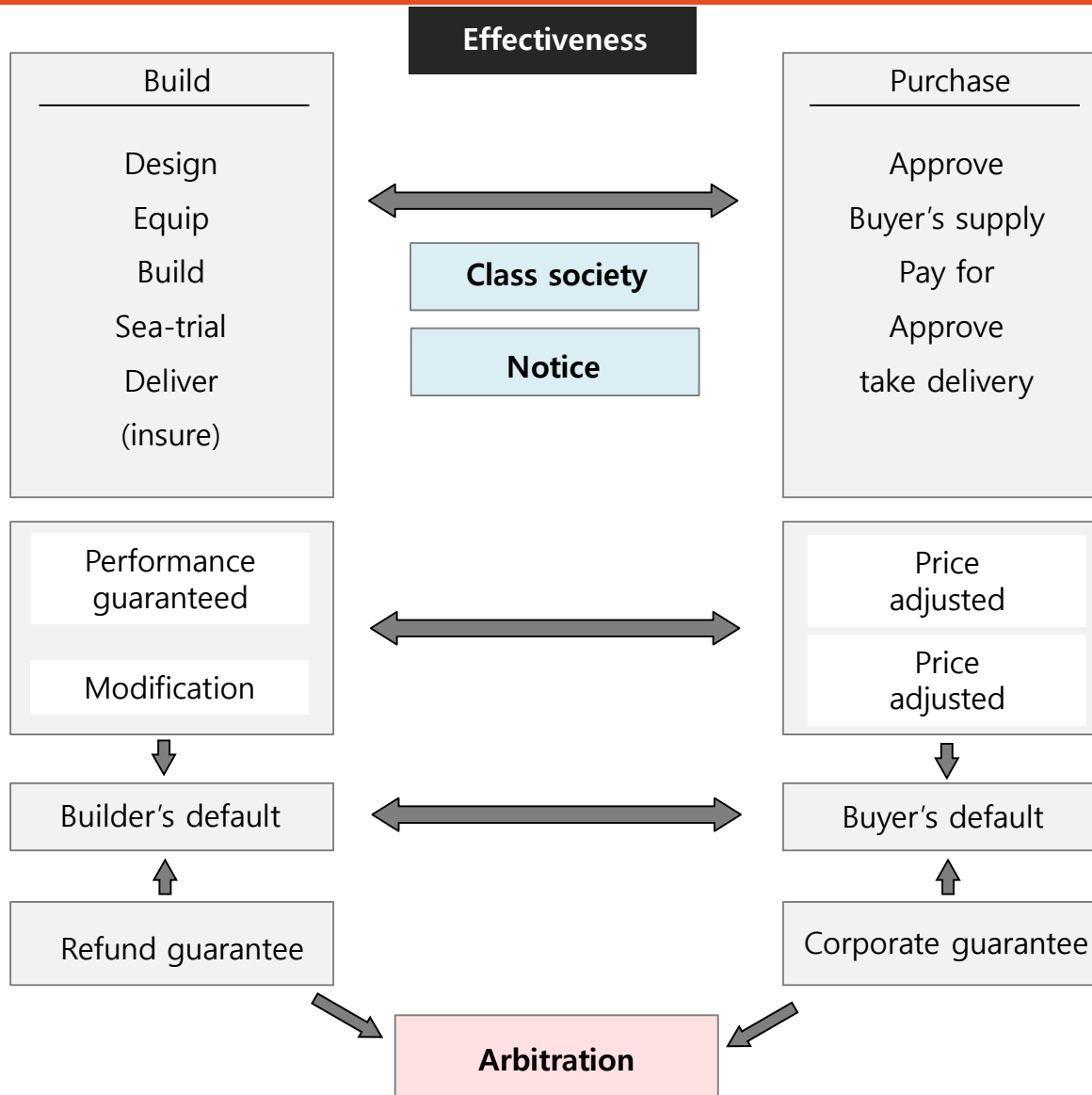
- **선박금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모두 용선주에게 집중되어야 함이 원칙**
 - ✓ 차주인 SPC의 대출 계약상 모든 채무 및 의무는 용선주에 전가되어야만 하며
 - ✓ Asset Financing의 기본적인 속성상 선박의 담보가치가 유지가 선박금융에 있어 주요 사항이므로, 용선주로 하여금 선박의 관리 의무에 철저를 기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
 - ✓ 선박 담보의 대체물인 보험 역시 보험금 규모, 부보 위험 및 보험사 등에 있어 대주단에 만족할 수준이 부보되어야만 하며
 - ✓ 용선주는 용선 계약을 유지함에 필요한 모든 법규를 준수하여야만 합니다.



VI. Shipbuilding Contract

- Shipbuilding Contract
- Supervision Agreement & Basic Agreement
- Refund Guarantee
- Memorandum of Agreement
- Novation Agreement

V. 1. 건조계약 내용



■ 실무상 논의 부분 (선박금융과 관련하여)

(1) 계약 당사자

- ✓ SPC와 P-Bond
- ✓ 왜 SPC인가? ... 특히, 국내의 경우
- ✓ P-bond와 외환관리법

(2) Novation Agreement

- ✓ 외환관리법과의 관계
- ✓ Refund Guarantee의 재 발급 여부?

(3) Permissible Delay와 Availability Period

(4) Builders Defaults와 R/G

(5) 선박 건조 계약상 지연이자의 설정

(6) 해외 발주와 외환 관리법

■ 특징

선박건조계약을 직접 수정함이 없이
별도의 계약을 통해 Charterer (용선주)가
선박건조 감독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고
그 범위 안에서 선박건조계약이 수정된 것으로 간주함

■ 유형

① Supervision Agreement

② Basic Agreement- Refund Guarantee가 결과적으로 조선소 뿐만
아니라 Charterer의 신용위험까지 부보하게 됨

■ 의미

- 건조기간 중 계약이 취소·해지되는 경우
조선소는 Buyer인 SPC에게 선 지급 받은
건조대금을 반환하여야 함
- 반환의무에 따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높은 은행이 발급한 보증서
- Letter of Guarantee, Standby L/C

■ 주요내용

- ① 무조건적 보증조항
- ② 독립적 보증조항
- ③ 요구불 즉시지급조항
- ④ 부보범위 (원금 및 이자)
- ⑤ 효력기간
- ⑥ 분쟁해결조항 등

■ 대주단 입장에서 주로 보아야 할 부분

- ① Assignee인 대주단의 직접 청구 가부
- ② 청구시점과 청구사유
- ③ 이자
- ④ R/G의 효력기간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 ⑤ 중재조항이 있는지 여부

- **Memorandum of Agreement**

매매 대상 선박, 가액, 대금의 지급방법,
검사 여부 및 그 종류, 인도장소, 인도서류 목록
등이 주요 내용에 해당함

- **Novation Agreement**

Builder, Buyer 및 New Buyer 3자간에 체결하는
선박건조계약 또는 구매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



VII. SPC란 무엇인가

SPC

Special Purpose Company의 약어이며
Special Purpose Vehicle (SPV)이라고도 함

- ✓ Where to establish ?
- ✓ Requirements to consider ?
- ✓ Banking Act ?
- 선박에 대한 과세 여부 (재산세, 양도세), 해당 법인 (SPC)에 대한 법인세 부과 여부 및 세율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 편의치적 (flag of convenience):
파나마, 마셜아일랜드, 온두라스, 벨리제, 등

- **1선박 1선주 (SPC)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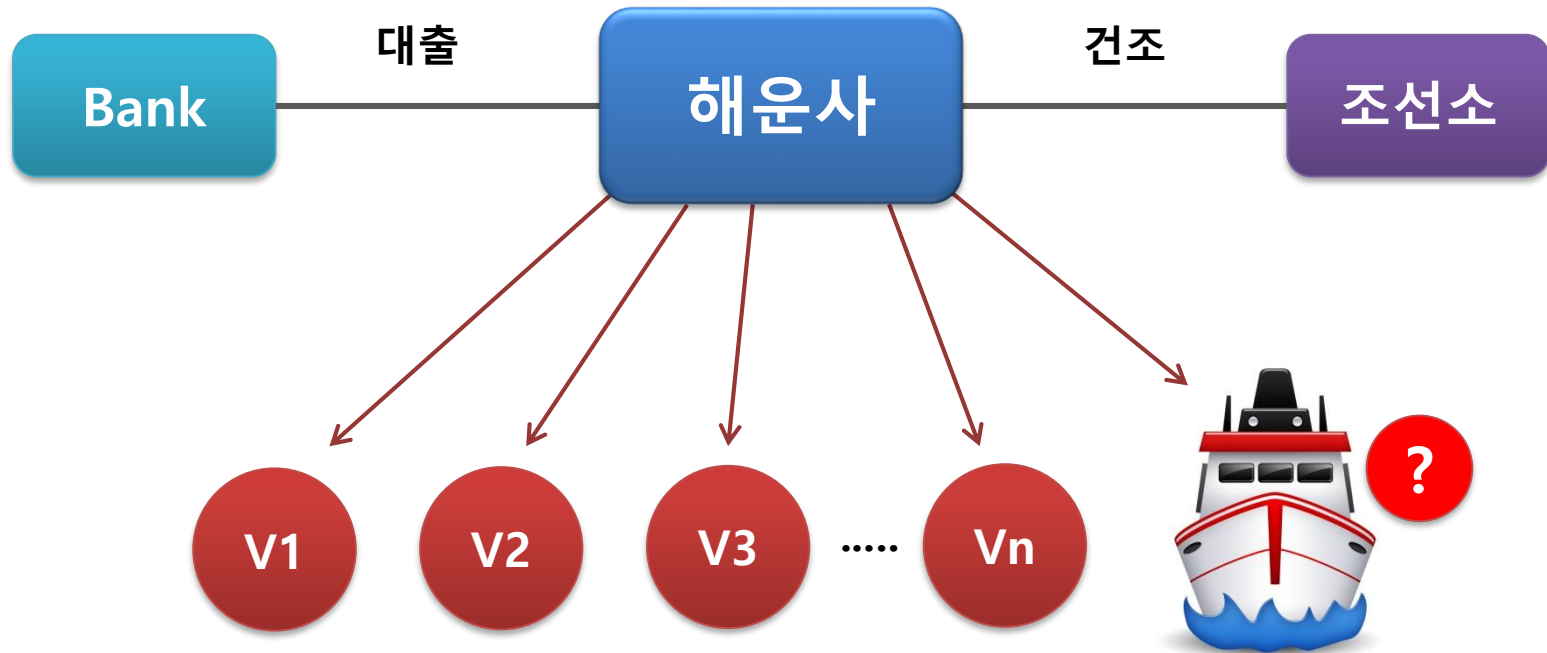
- ✓ 선박 소유에 따른 위험이 선사의 기타 자산에 까지 확산되는 것을 방지

-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계약 (BBCHP)**

- ✓ 우리나라의 외환관리법상 엄격한 외환 및 금융거래 규제를 완화 및 회피하기 위한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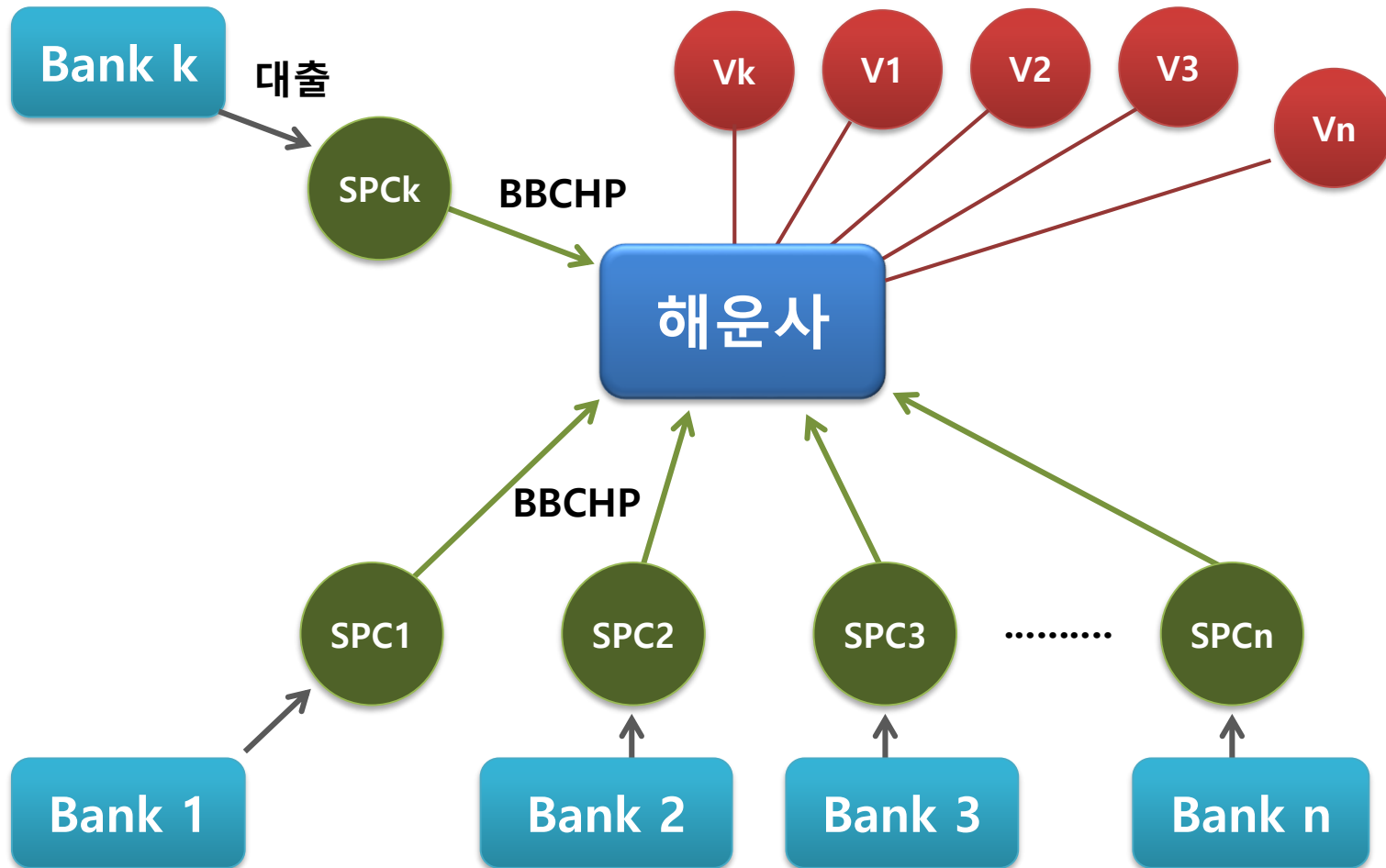
- **현금 흐름의 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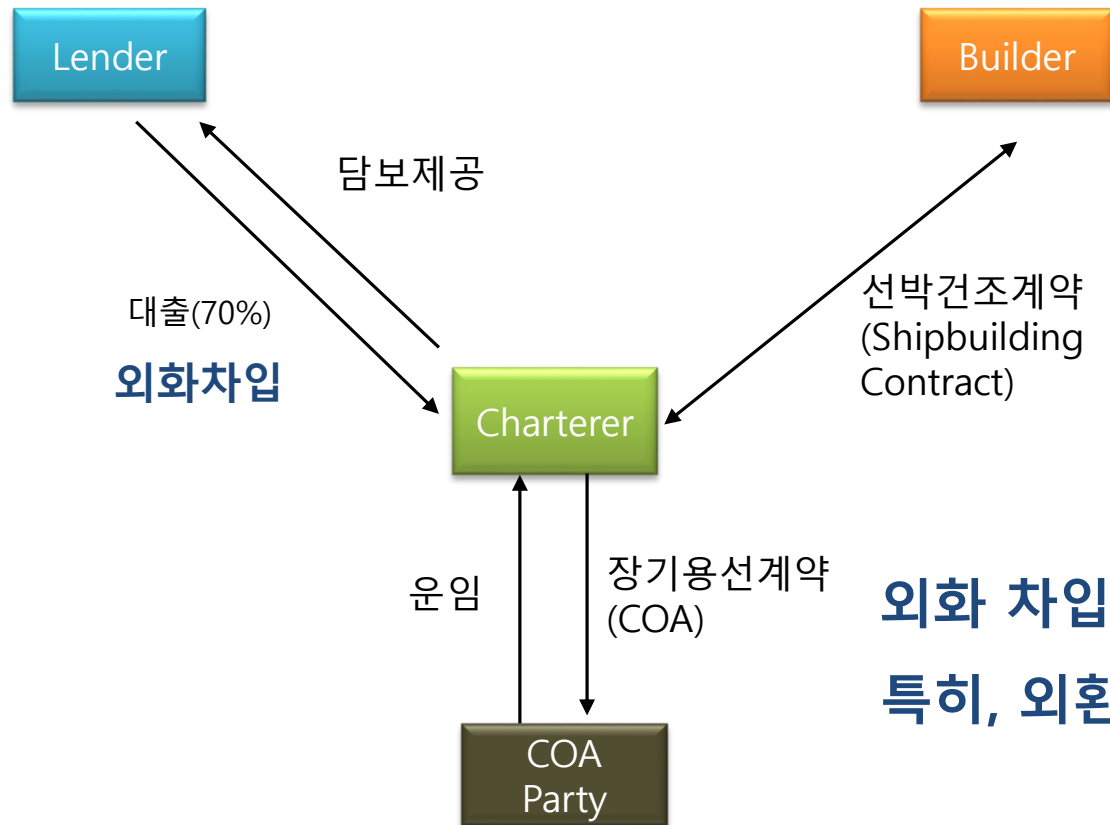
- ✓ 특정사업 (선박운송사업)의 현금흐름이 실질 사업주 (운영선사)의 현금흐름이나 다른 사업의 현금흐름과 혼합되지 아니하여 투자자에게 담보로서 진정한 효과를 갖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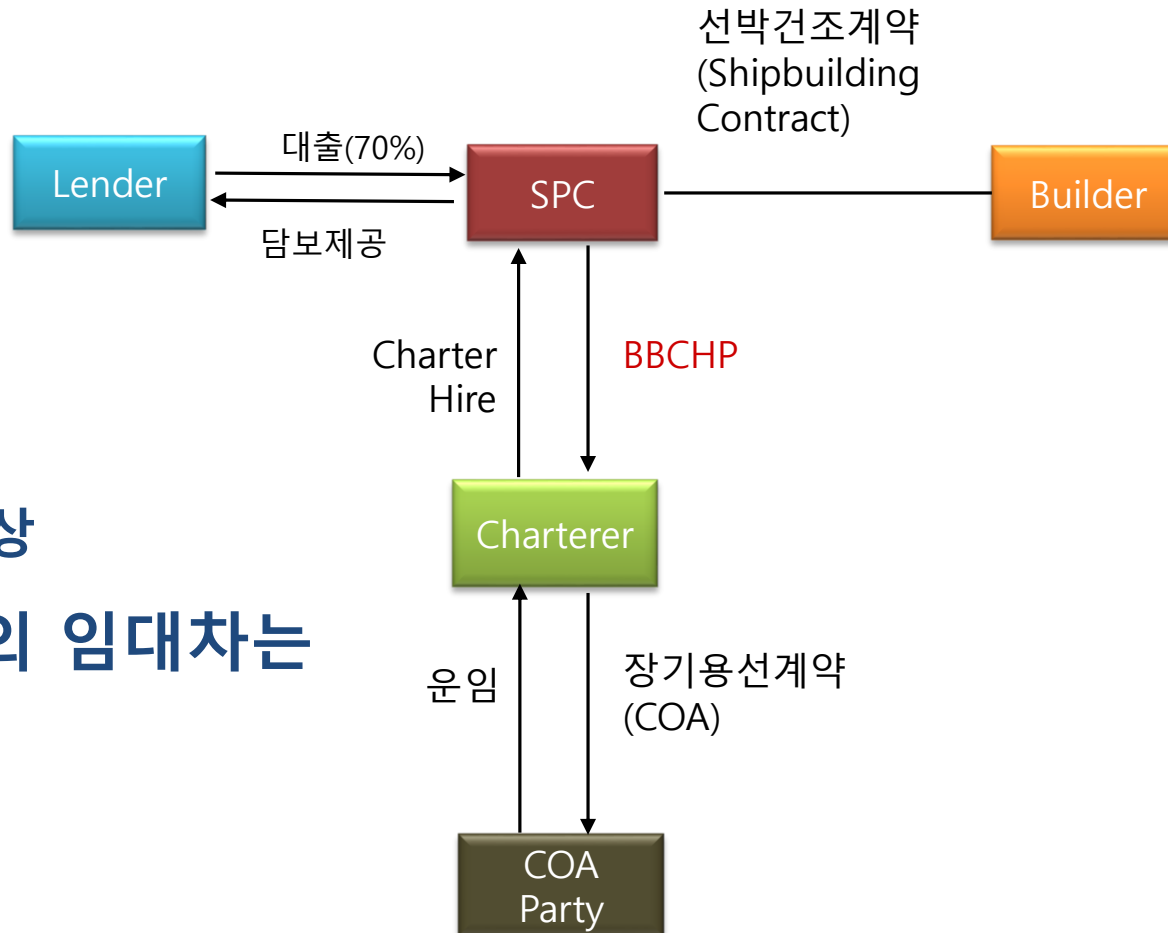
➡ 법률적 효과는?

➡ V_k 가 침몰시 법률효과는?





외화 차입이 가능한가?
특히, 외환 관리법상 ...



외환관리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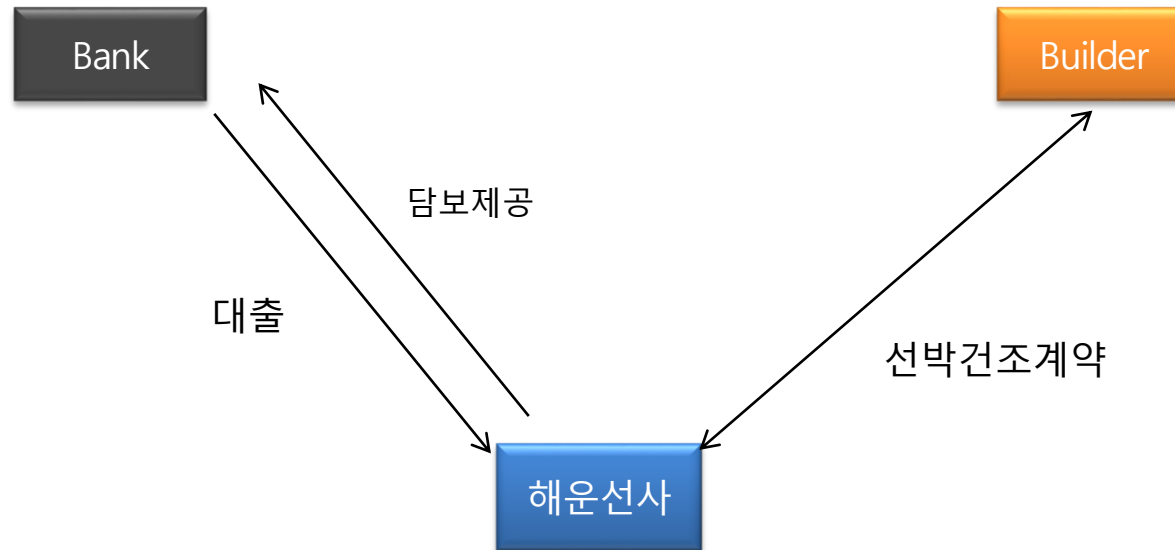
산업장비의 임대차는
허용 ?

- SPC가 편의치적제도와 연계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제도 이용의 이점을 얻을 수 있음:

- ✓ 통상의 자유의 정치적 제한에 대한 회피수단
- ✓ 선주 소속국의 정치적 불안으로부터 회피
- ✓ 조세부담의 완화
- ✓ 보다 저렴한 제3국 선원의 활용
- ✓ 금융상의 편의
- ✓ 선박의 안전기준 유지 등에서 비용 절감

- 우리나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보다 금융기관의 선박금융 채권 보호에 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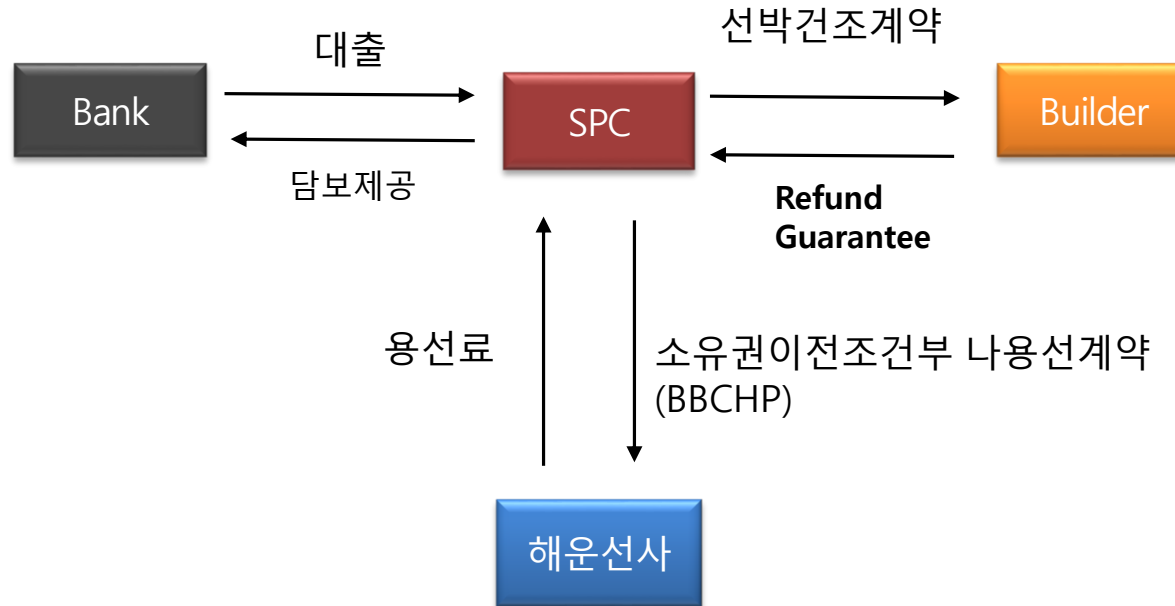
VII. 왜 SPC인가_도산 절연(1)_(구)기촉법



해운선사가 Work-Out 절차에 들어가면,
위 Bank의 대출 채권은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구속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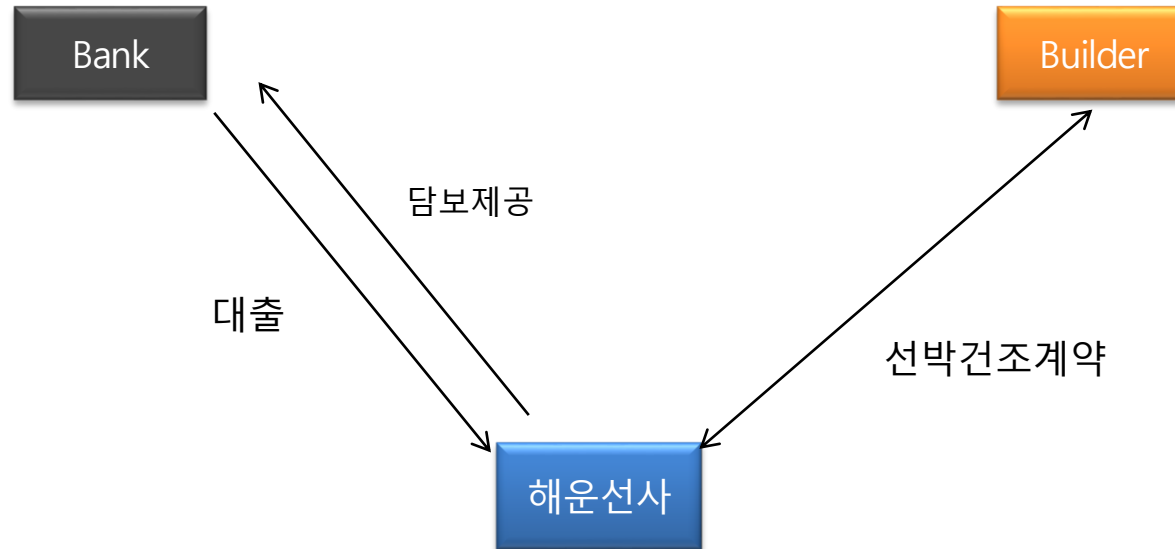
VII. 왜 SPC인가_도산 절연(1)_구)기촉법



해운선사가 Work-Out 절차에 들어가면,

위 Bank의 대출 채권은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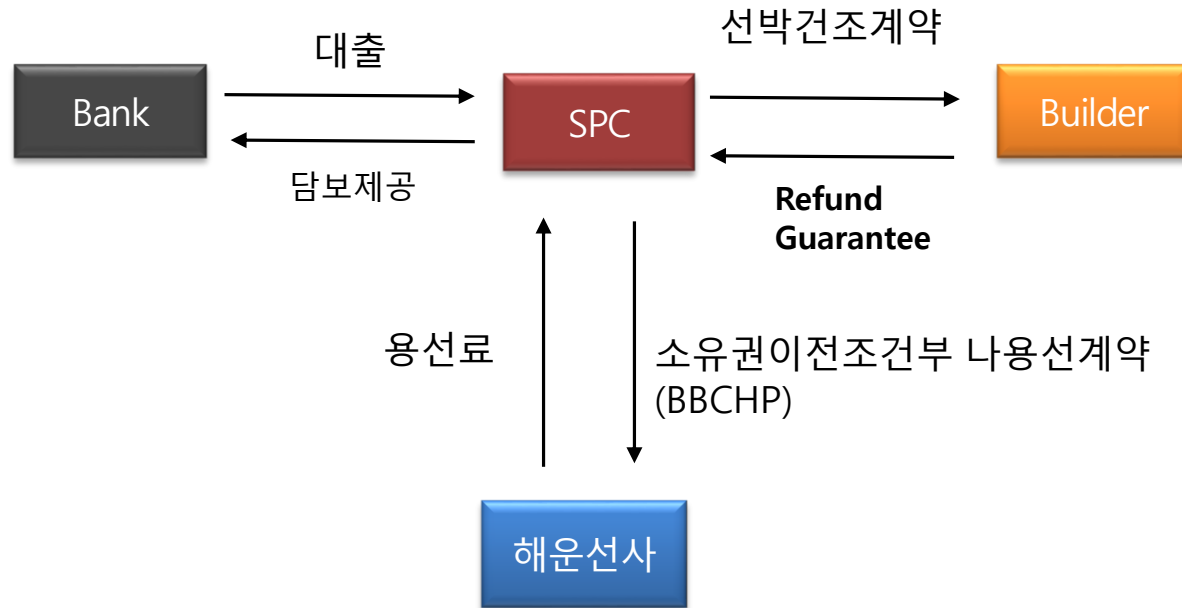
⇒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구속을 받지 않음: 채권금융기관이 아니므로



해운선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위 Bank의 대출 채권은 어떤 종류의 채권이 될 것인가?

⇒ 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회생담보권

VII. 왜 SPC인가_도산 절연(2)_채무자회생법



해운선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위 Bank의 대출 채권은 어떤 종류의 채권이 될 것인가?

⇒ 미이행쌍무계약 ... 공익채권

■ 이른바 편의치적제도는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 할 수는 없더라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에 있던 선박에 대해 사실상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그 선박이 우리나라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실질 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01 4 판결 등)

■ 외환관리법상 신고 및 수리의 문제

- ✓ 국내 거주자가 SPC의 주주가 되는 경우

■ 설립의 예

- ① 본사의 부채비율의 증가를 막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단순 매각 이익만을 목적으로 선박을 도입하는 경우
- ③ UK Tax Lease 등의 거래구조 내 편입으로 인해 해당국의 법률상 요구에 따른 경우
- ④ 해외 해운사와 공동투자를 하는 경우

■ 외환관리법에 따른 해외투자신고 필요



VIII. Tax Lease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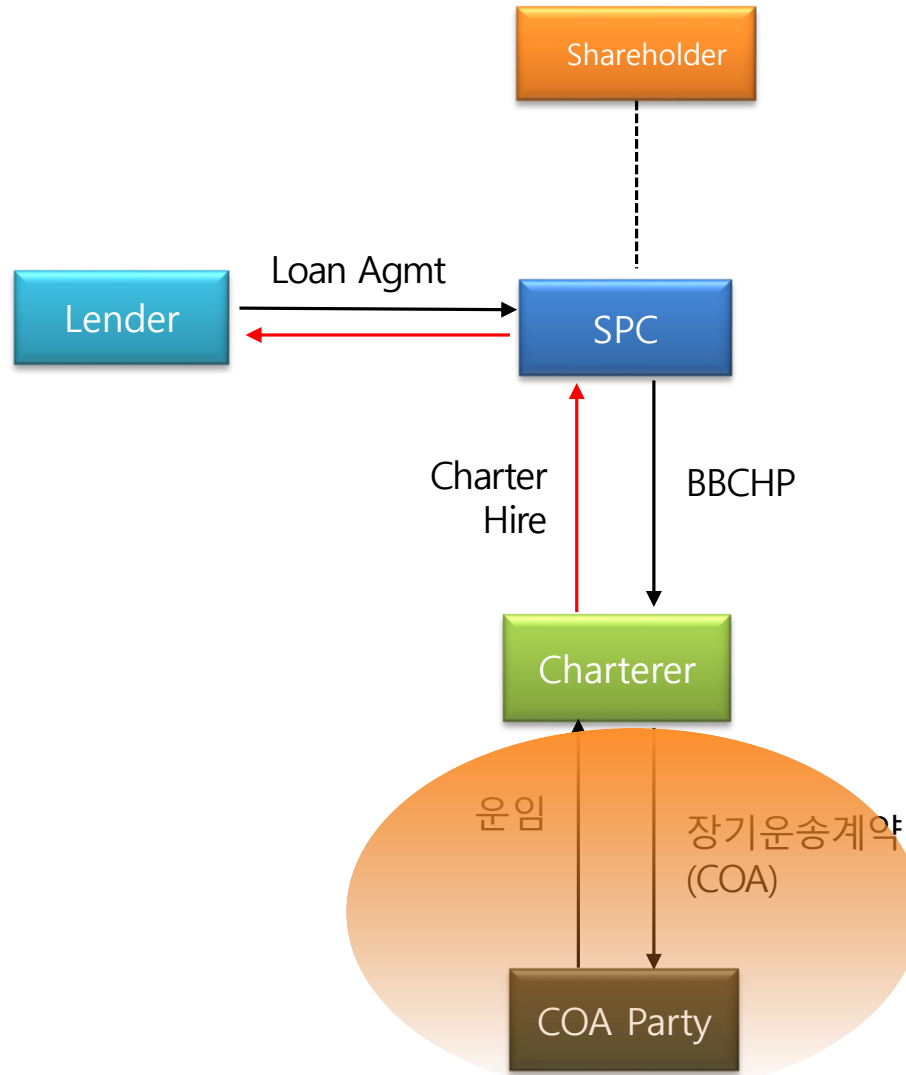
■ 특징

- ✓ 몇몇 금융 선진국에서 선박·항공기 분야에서 도입하고 있는 금융의 한 형태
- ✓ 각국의 세제상의 혜택 및 지원을 최대한 거래구조에 편입시켜 동 혜택을 이자율 감소에 사용
- ✓ 미국의 항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U.S. C-FISK Structure), 영국의 해운산업에 대한 세제상 지원(Capital Allowance Act / Tonnage Tax Benefit), 독일의 투자에 따른 소득세 공제 혜택 (K/G Fund)
- ✓ 다양한 이용기법 (Accelerated Depreciation, Tax Deferral, Group Allow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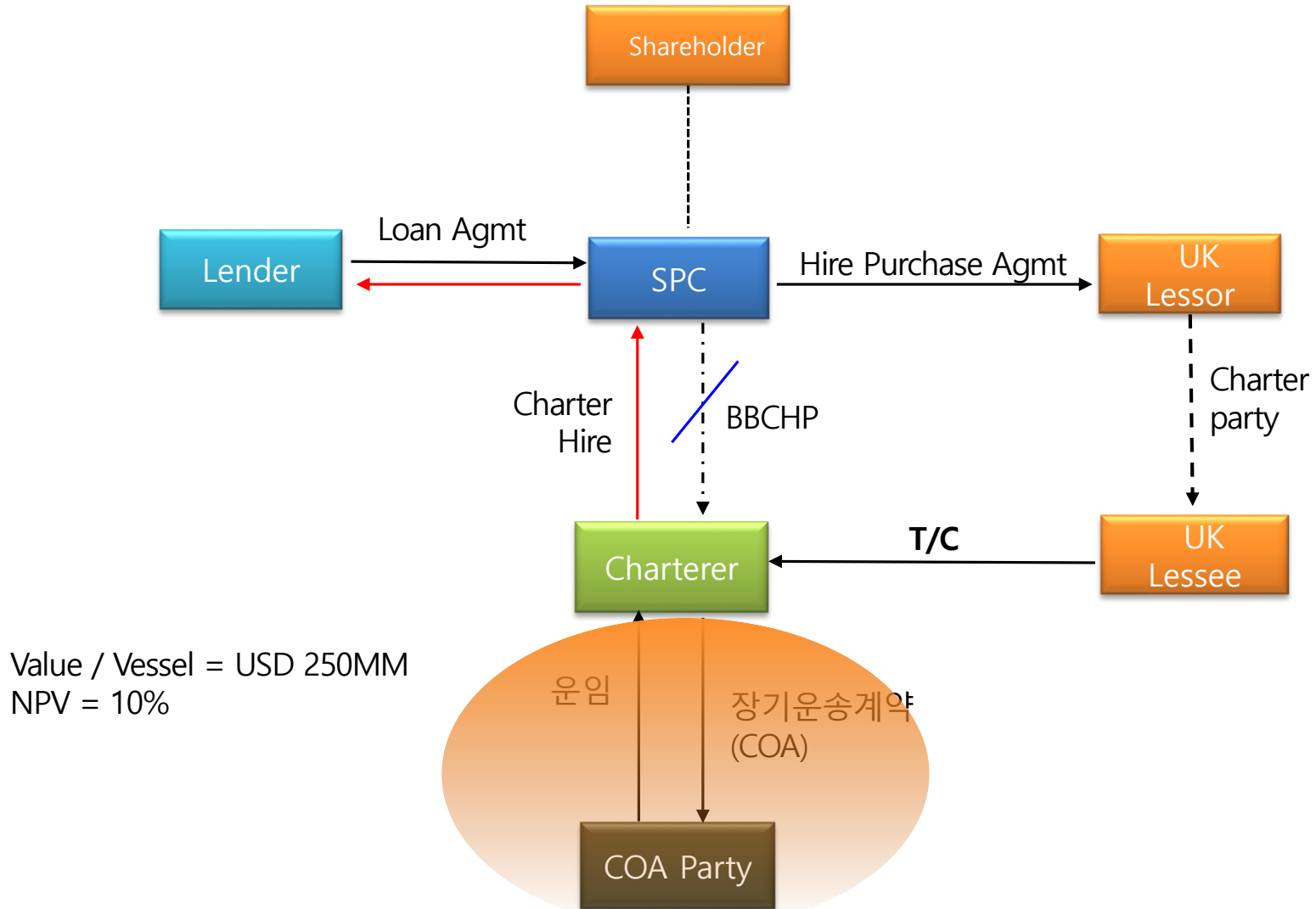
■ 장단점

- ✓ 장래 얻을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을 현가화하여 조달 비용의 감소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 ✓ 복잡한 거래구조에 따른 고비용, 세법 및 회계원칙의 변화가 있을 경우 세제상의 혜택이 감소 또는 부인될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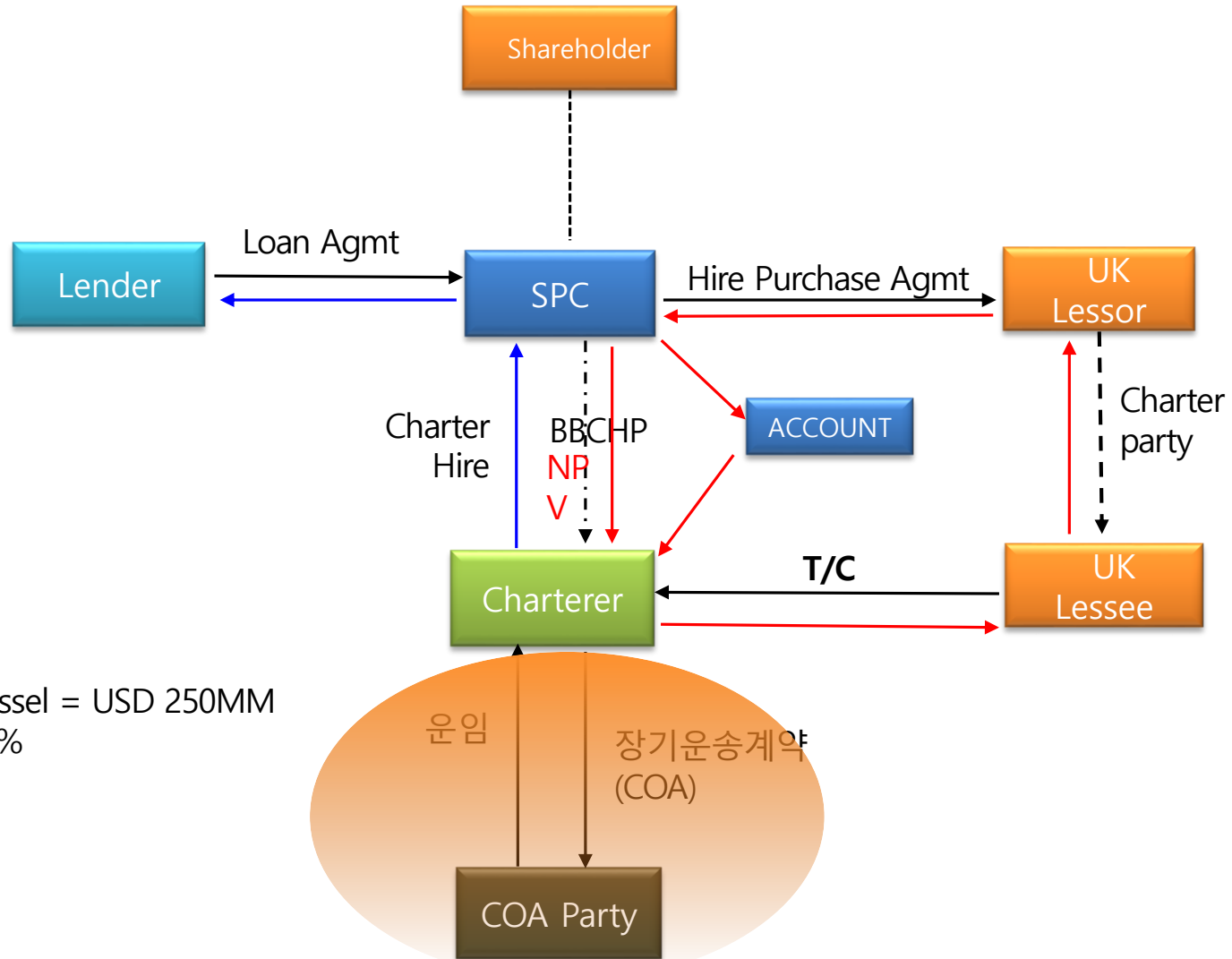
VIII. UK Tax Lease 구조도



VIII. UK Tax Lease 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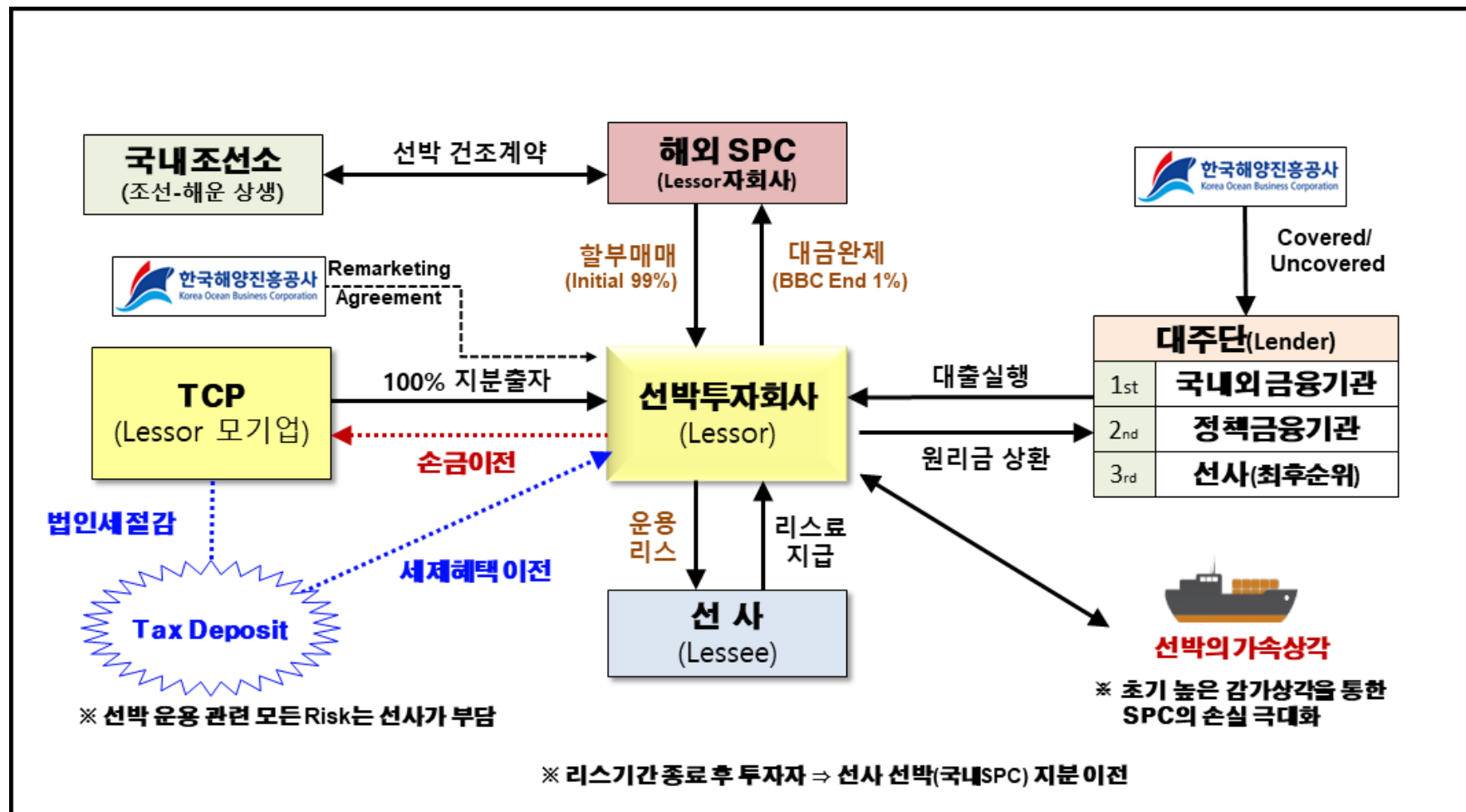


VIII. UK Tax Lease 구조도



Value / Vessel = USD 250MM
NPV = 10%

VIII. 한국형 조세리스 구조도(안)





IX. BBCHP 계약과 기업 회생 절차

용선계약 및 운송계약의 성격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회사정리법 제103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해당하는 조항)에 정한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본래적으로 쌍방의 채무 사이에 성립, 이행, 존속상 법률적, 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려면 서로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계약상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5다38263판결 참조)

√ 용선계약 중 BBCHP의 경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해당 여부에 관해 논란이 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의 최근 실무는 BBCHP를 쌍무계약으로 인정함.

회생절차에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취급

√ 관리인의 이행 선택권: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2)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 Owner 및 화주의 해지권 제한: 대법원 2005다 38263판결에서는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 예외적인 취급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 판결을 기초로 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 계약 상대방의 해지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종래 파산법원의 실무임.

(*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관리인의 선택권을 부여한 회사정리법 제103조(현행법 제119조)의 취지에 비추어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무효로 보아야 한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정리절차개시 이후 종료시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도산해지조항의 적용 내지 그에 따른 해지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등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 대법원 2005다 38263판결 실시 내용 중)

회생절차에서 미이행 쌍무계약의 취급

- √ 이행선택권 행사 시기: 회생절차 개시결정시 –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제2회 관계인집회)의 종료시 (법 제119조 제1항)
- √ 계약 상대방의 권리: 관리인에 대한 이행선택의 최고 (법 제119조 제2항)
- √ 이행 선택의 법률적 효과
 - 개시 전 미지급 용선료채권은 회생채권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법 제118조 제1호, 법원의 조기 변제허가를 받는 경우는 예외)
 - 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한 용선료채권은 공익채권화하여 정상 변제 (법 제179조 제1항 제7호)
- √ 해지 선택의 법률적 효과
 - 개시 전 미지급 용선료채권은 회생채권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법 제118조 제1호)
 - 회생절차 개시 후 반선 때까지의 용선료채권은 공익채권으로 정상 변제 (법 제179조 제1항 제2호)
 -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법 제118조 제3호)

√ BBC/TC

- 대상선박은 법률적, 경제적으로 용선사의 재산이 아님
 - ⇒ 용선사의 회생절차가 선박저당권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BBCHP

- 대상선박의 법률적 소유권은 SPC에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용선사가 지분을 가짐 (연불취득)
 - ⇒ 용선사의 회생절차 개시가 선박저당권의 실행에 영향을 미침

- 국내에서의 선박저당권 실행

- ⇒ 현재까지의 실무로는 허용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임
- ⇒ 저당권실행으로 인한 변제 금액에 대한 관리인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성 있음

- 해외에서의 선박저당권 실행

- ⇒ Stay Order**가 없는 한 가능
- ⇒ Stay Order를 허용하는 국가: 미국,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등
- ⇒ Stay Order를 불허하는 국가: 인도, 파나마, 중국 등

(** Stay Order: 해외에서의 도산절차 진행을 승인하여 자국 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중단시키는 법원의 명령)

IX. 3. 용선사 채권자의 가압류에 대한 대응

√ 용선사는 선박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용선사의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선박을 압류할 수 없음
(예외: 선박우선평권(Maritime lien)이 인정되는 채권)

√ 용선사의 일반채권자가 벙커를 압류하는 경우

⇒ de-bunkering, 새로 bunker 주입, 출항

⇒ 관련 항구에서 de-bunkering이 불가능한 경우, 청구채권 지급하고 출항할 수 밖에 없음

⇒ 반복되는 가압류에 대비, 선박관리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벙커소유자를 변경하는 방안

√ 선박우선평권이 인정되는 채권을 기초로 대상선박을 압류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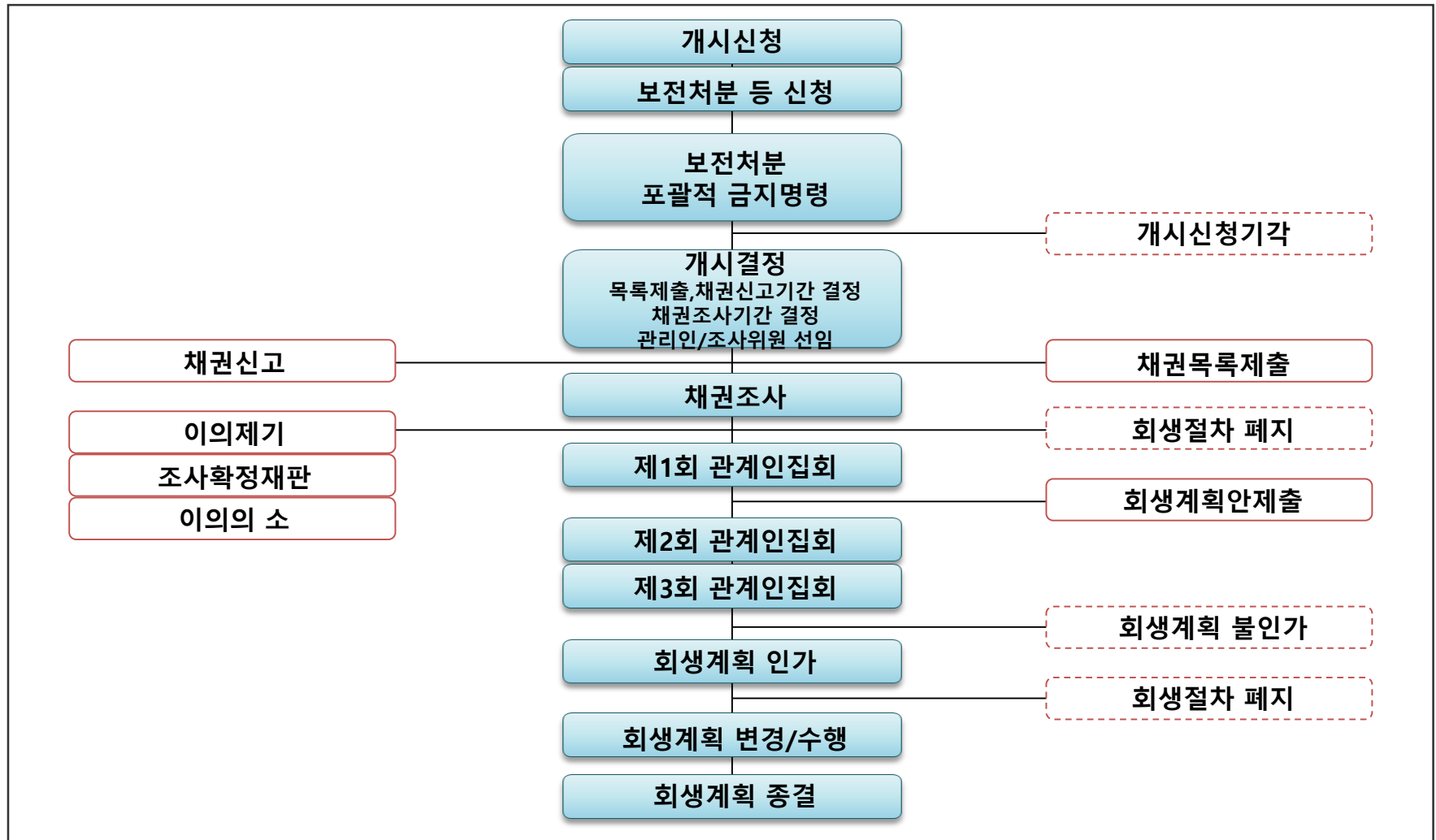
(예: 가압류시로부터 일정 시한 이전에 발생한 Bunker claim)

⇒ 청구채권 지급하고 압류 해제

⇒ Stay Order를 통해 취소하는 방안 (해당 국가의 법률에 대한 사전 확인 필요)

(***주의: 선박우선평권이 인정되는 채권의 범위는 나라마다 다르고, 법정지법/선적지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도 나라마다 다르므로 구체적, 개별적인 검토 및 접근 필요)

회생절차의 흐름도



회생회사의 재산 보전

국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채무자 재산 산일 방지 방법

가. 중지명령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것,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절차,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제44조 제1항).

그리고 법원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제44조 제4항)

회생회사의 재산 보전

국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채무자 재산 산일 방지 방법

나. 포괄적 금지명령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별적 중지명령에 의해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제45조 제1항).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된다(제4조 제3항).

회생회사의 재산 보전

국외자산의 산일방지 방법: STAY ORDER(Interim Order)

속지주의 완화 필요성

현대사회에서 개인이나 국가가 다수의 국가에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위의 속지주의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에서 UNCITRAL에서는 1997년에 '국제도산에 관한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이하 모델법)이라고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이른바 속지주의를 수정한 보편주의적 관점에서의 입법형식을 권고하였는데. 우리도 이를 감안하여 속지주의를 폐지하고 보편주의(여러 국가에 존재하는 채무자이 모든 자산을 채무자의 이해관계의 중심지, 영업소재지, 본사소재지 등 하나의 주도국가에서 하나의 파산절차에 의해 관리하고, 그 절차에서 이루어진 명령과 처분은 세계 어디서나 효력을 인정하는 주의)를 일부 수용하고 있다

한진샤먼호 선박임의경매 건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16타경 11161 선박임의경매

채권자 : 월드퓨얼 서비시즈(싱가포르) 피티이 엘티디, 월드퓨얼 서비시즈 잉스

채무자 : 회생회사 주식회사 한진해운의 관리인 석태수

소유자 : 알이에프 3 쉽핑 에스에이(송달장소 : 한진샤먼호, 2016. 10. 7.)

주 문

별지 기재 선박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소유자는 위 선박을 창원시 진해구 신항로 434(안골동) 부산신항에 정박하여야 한다.

1) 미국

법원 : UNITED STATES BANKRUPTCY COURT DISTRICT OF NEW JERSEY

명령 : PROVISIONAL ORDER GRANTING RECOGNITION OF FOREIGN MAIN PROCEEDING AND CERTAIN RELATED RELIEF PURSUANT TO SECTIONS 362, 365, 1517, 1519, 1520, 1521, AND 105(A) OF BANKRUPTCY CODE

[주요 내용]

While this Order is in effect,are hereby made applicable in this case to Hanjin and the property of Hanjin within the territorial jurisdiction of the U.S. including owned, operated or chartered (leased) vessels or property thereon (including bunkers) and any other transportation equipment (including containers and chassis) (collectively, the “Hanjin Assets”).

3) 기타국가 - 일본

법원 : Tokyo District Court

[주요내용]

None of the creditors may initiate proceedings for **compulsory execution (kyosei shikko), provisional attachment (kari sashiosae) or provisional disposition (kari shobun)** (excluding those based on the claims the settlement of which is not prohibited in the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as approved in Paragraph 1) against the Debtor's property.



X.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신 기촉법의 주요 변경 내용

신 기촉법은 기촉법예의 참여범위 및 적용대상 확대를 통한 형평성 문제 보완하였습니다.

- 참여범위 확대 : 채권금융기관 → 모든 금융 채권자
- 적용대상 확대 : 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 기업 → 모든 기업
 - 연기금 · 공제회 등도 기촉법 참여 → 제도의 효과성 제고
 - 중소기업에도 기촉법 적용 → 제도의 수혜범위 확대
- 다만, 모든 금융채권자가 기촉법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기촉법의 장점인 신속성·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운용상 필요한 경우 주채권은행은 금융채권자협의회 의결을 거쳐 소액채권자·사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배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현실적으로 기촉법 절차 적용의 실익이 적은 경우에는 기촉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외국기업, 금융회사, 회생절차 등 진행기업, 신용공여액 50억 원 미만 기업 등이 적용 배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22조(금융채권자협의회)

- ① 부실징후기업의 원활한 기업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의 금융채권자로 구성된 **금융채권자협의회**를 둔다.
- ② 주채권은행은 협의회의 소집 및 운영을 주관하며,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를 대표한다.
- ③ 주채권은행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주채권은행이 아닌 금융채권자는 단독 또는 다른 금융채권자와 합하여 공동관리기업에 대한 금융채권액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채권자가 보유한 총 금융채권액(이 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에서 출자전환된 채권액을 포함하며, 이하 "협의회 총금융채권액"이라 한다)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협의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주채권은행은 지체 없이 협의회 소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채권"이란 기업 또는 타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해당 기업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2. "금융채권자"란 금융채권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감사합니다

Lee
& Ko